

대분류 / 02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 03
재무·회계

소분류 / 01
재무

세분류 / 02
자금

학습모듈 / 04

04 자금운용

LM0203010204_14v2

자금 학습모듈

01. 자금계획 수립



02. 자금조달 준비



03. 자금조달



04. 자금운영



05. 자금정보제공



06. 재무위험관리



07.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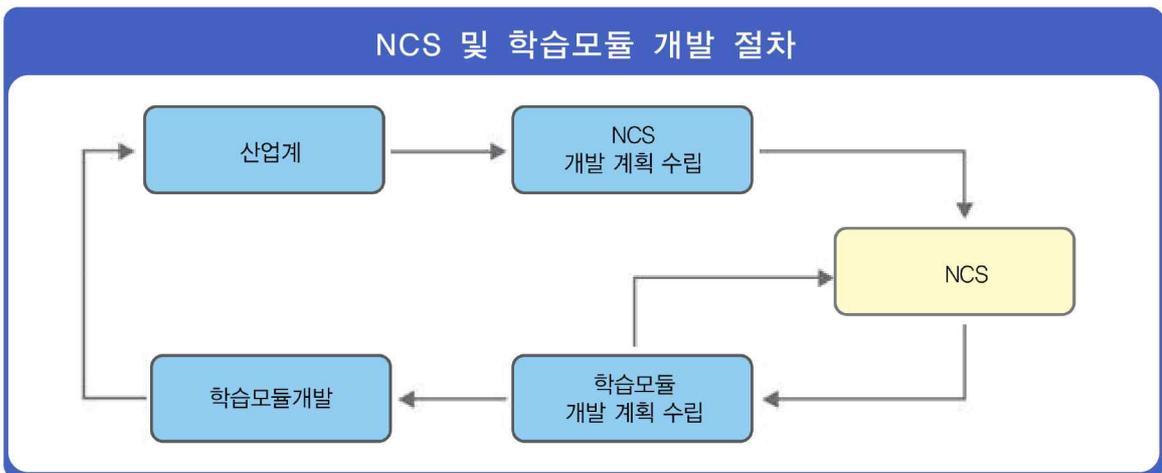


NCS 학습모듈의 이해

※ 본 학습모듈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http://www.ncs.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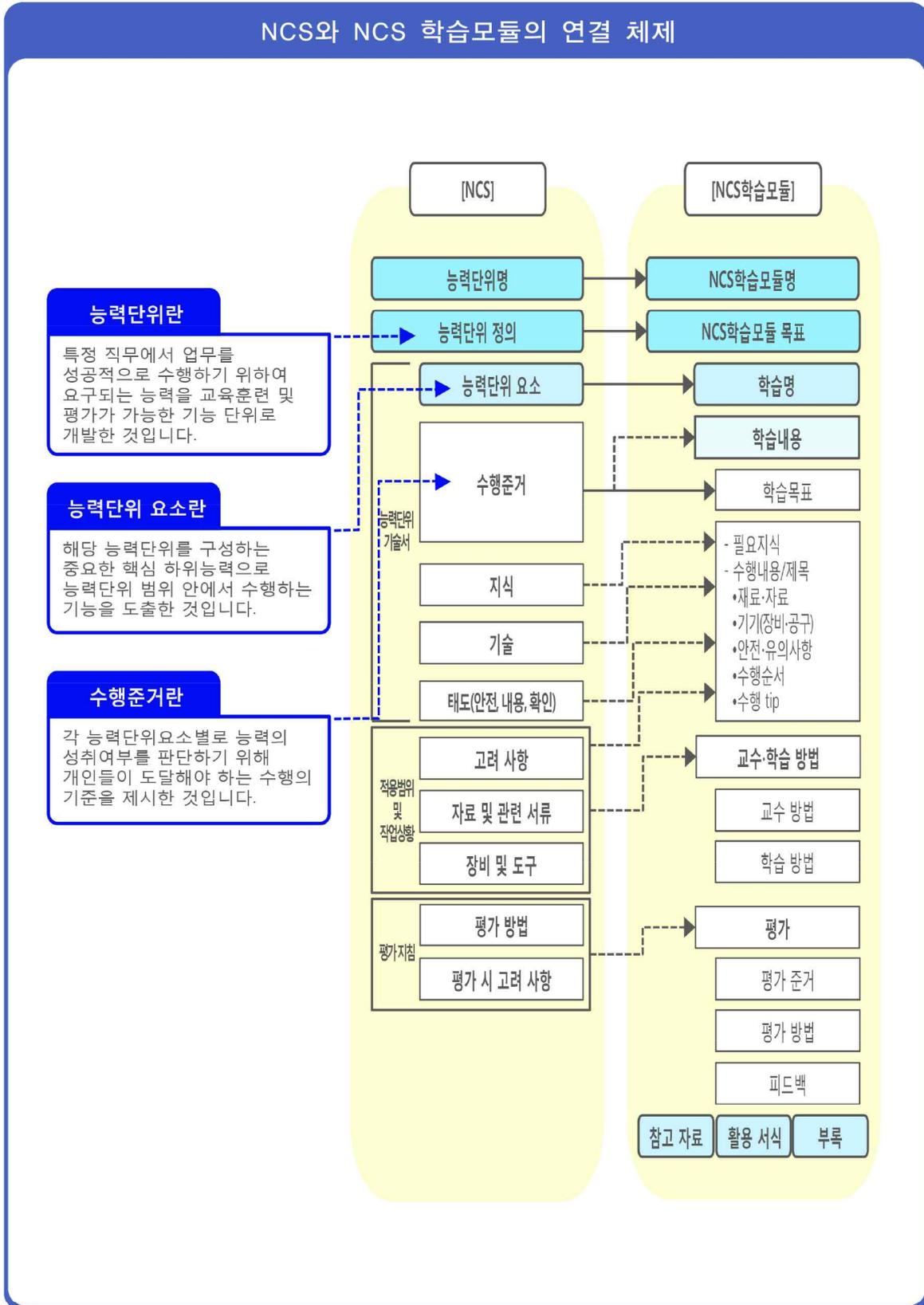
(1) NCS 학습모듈이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이 현장의 ‘직무 요구서’라고 한다면, NCS 학습모듈은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NCS 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NCS 학습모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NCS 학습모듈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교육훈련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취목표와 학습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 둘째, NCS 학습모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의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직장교육기관 등에서 표준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시에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NCS와 NCS 학습모듈 간의 연결 체제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 NCS 학습모듈의 체계

- NCS 학습모듈은 1.학습모듈의 위치, 2.학습모듈의 개요, 3.학습모듈의 내용 체계, 4.참고 자료, 5.활용 서식/부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NCS 학습모듈의 위치

- NCS 학습모듈의 위치는 NCS 분류 체계에서 해당 학습모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예시 : 이·미용 서비스 분야 중 네일미용 세분류

NCS-학습모듈의 위치

대분류	이용 ·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
중분류	이 · 미용
소분류	이·미용 서비스

세분류	능력단위	학습모듈명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미용	네일 기본 관리	네일 기본관리
이용	네일 랩	네일 랩
	네일 팁	네일 팁
	젤 네일	젤 네일
	아크릴릭 네일	아크릴 네일
	평면 네일아트	평면 네일아트
	융합 네일아트	융합 네일아트
	네일 샵 운영관리	네일샵 운영관리

학습모듈은

NCS 능력단위 1개당 1개의 학습모듈 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고용 단위 및 교과단위를 고려하여 능력단위 몇 개를 묶어서 1개의 학습모듈로 개발할 수 있으며, NCS 능력단위 1개를 여러 개의 학습모듈로 나누어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2. NCS 학습모듈의 개요

구성

- NCS 학습모듈 개요는 학습모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학습모듈의 목표**, **선수 학습**, **학습모듈의 내용 체계**, **핵심 용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모듈의 목표	해당 NCS 능력단위의 정의를 토대로 학습목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선수 학습	해당 학습모듈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학습모듈, 학습 내용, 관련 교과목 등을 기술한 것입니다.
학습모듈의 내용 체계	해당 NCS 능력단위요소가 학습모듈에서 구조화된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핵심 용어	해당 학습모듈의 학습 내용, 수행 내용, 설비·기자재 등 가운데 핵심적인 용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활용 안내

예시 : 네일미용 세분류의 ‘네일 기본관리’ 학습모듈

네일 기본관리 학습모듈의 개요

학습모듈의 목표
고객의 네일 보호와 미적 요구 충족을 위하여 효과적인 네일 관리로 프리에지 형태 만들기, 큐티클 정리하기, 컬러링하기, 보습제 도포하기,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선수학습
네일숍 위생서비스(LM1201010401_14v2)

학습모듈의 내용체계

학습	학습내용	NCS 능력단위요소		
		코드번호	요소명칭	수준
1. 프리에지 형태 만들기	1-1. 네일 파일에 대한 이해와 활용	1201010403_12v2.1	프리에지 모양 만들기	3
	1-2. 프리에지 형태 파일링			
2. 큐티클 정리하기	2-1. 네일 기본관리 매뉴얼 이해	1201010403_14v2.2	큐티클 정리하기	3
	2-2. 큐티클 관리			
3. 컬러링하기	3-1. 컬러링 매뉴얼 이해	1201010403_14v2.3	컬러링	3
	3-2. 컬러링 방법 선정과 작업			
	3-3. 쉘 컬러링 작업			
4. 보습제 도포하기	4-1. 보습제 선정과 도포	1201010403_14v2.4	보습제 바르기	2
	4-2. 각질제거			
5. 네일 기본관리 마무리하기	5-1. 유본기 제거	1201010403_14v2.5	마무리하기	3
	5-2. 네일 기본관리 마무리와 정리			

핵심 용어
프리에지, 니퍼, 푸셔, 플리시, 네일 파일, 스웨어형, 스웨어 오프형, 라운드형, 오발형, 포인트형

학습모듈의 목표는

학습자가 해당 학습모듈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모듈의 전체적인 내용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수학습은

교수자나 학습자가 해당 모듈을 교수 또는 학습하기 이전에 이수해야 할 학습내용, 교과목, 핵심 단어 등을 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개별 학습, 자기 주도 학습,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는

학습모듈을 통해 학습되고 평가되어야 할 주요 용어입니다. 또한 당해 모듈 또는 타 모듈에서도 핵심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며, 「NCS 국가 직무능력표준」 사이트(www.ncs.go.kr)에서 색인(찾아보기)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NCS 학습모듈의 내용 체계

구성

- NCS 학습모듈의 내용은 크게 **학습**,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해당 NCS 능력단위요소 명칭을 사용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학습은 크게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구성되며 해당 NCS 능력단위의 능력단위 요소별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토대로 학습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습 내용	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 필요 지식, 수행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수행 내용은 재료·자료, 기기(장비·공구), 안전·유의 사항, 수행 순서, 수행 tip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학습모듈의 학습 내용은 업무의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교수·학습 방법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자의 활동 및 교수 전략, 학습자의 활동을 제시한 것입니다.
평가	평가는 해당 학습모듈의 학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준거,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피드백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활용 안내

예시 : 네일미용 세분류의 ‘네일 기본관리’ 학습모듈의 내용

학습 1	프리에지 형태 만들기(LM1201010403_14v2.1)
학습 2	큐티클 정리하기(LM1201010403_14v2.2)
학습 3	컬러링하기(LM1201010403_14v2.3)
학습 4	보습제 도포하기(LM1201010403_14v2.4)
학습 5	네일 기본관리 마무리하기(LM1201010403_14v2.5)

학습은
해당 NCS 능력단위요소 명칭을 사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은 일반교과의 '대단원'에 해당되며, 모듈을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가 됩니다. 또한 완성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은
요소 별 수행준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반교과의 '중단원'에 해당합니다.

학습목표는
모듈 내의 학습내용을 이수했을 때 학습자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수업시간의 과목목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1. 컬러링 매뉴얼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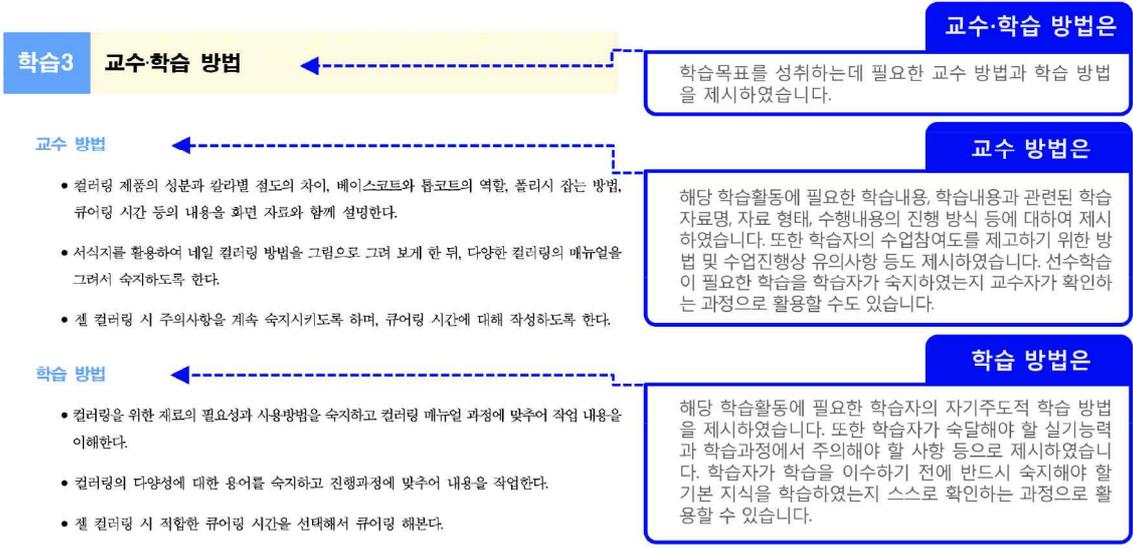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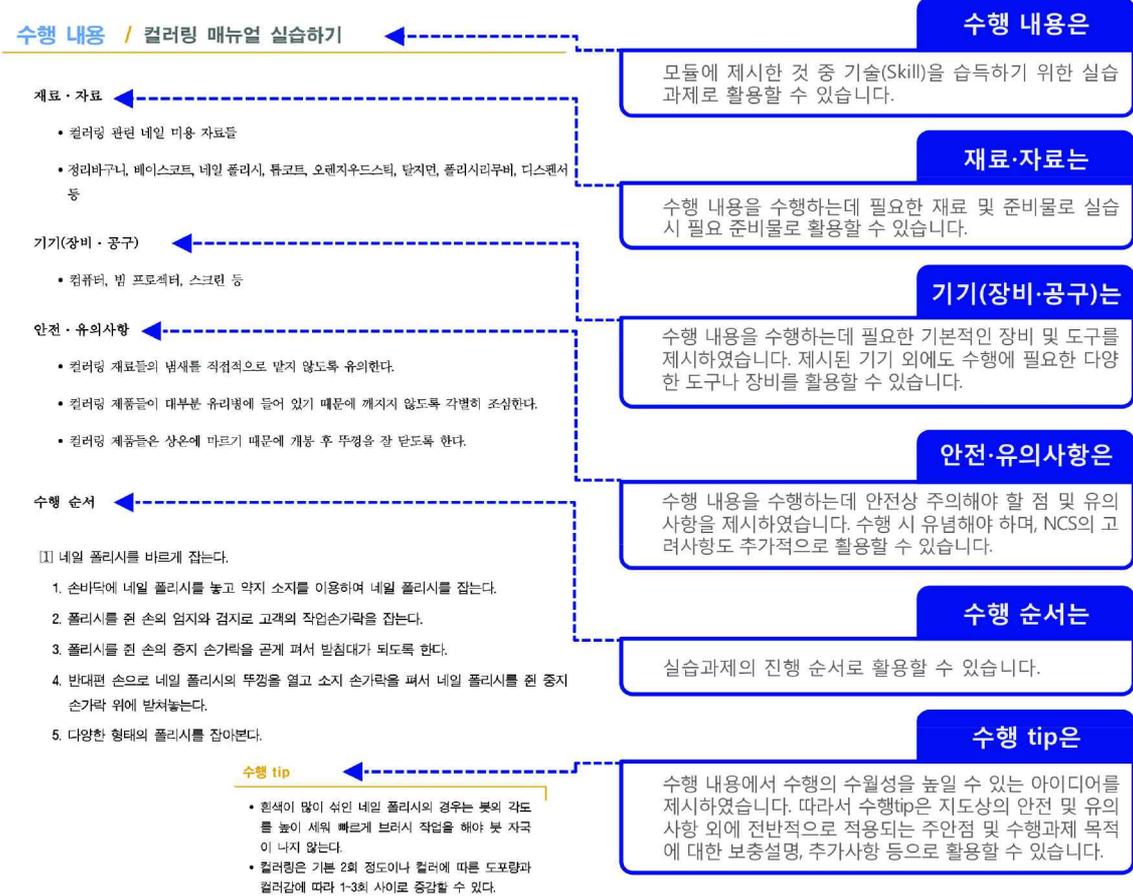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요구에 따라 네일 폴리시 색상의 침착을 막기 위한 베이스코트를 아주 얇게 도포할 수 있다. 작업 매뉴얼에 따라 네일 폴리시를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다. 작업 매뉴얼에 따라 네일 폴리시 도포 후 컬러 보호와 광택 부여를 위한 톱코트를 바를 수 있다.
-------------	--

필요 지식 /

□ 컬러링 매뉴얼

컬러링 작업 전, 이세톤 또는 네일 폴리시 리무버를 사용하여 손톱표면과 큐티클 주변, 손톱 밑 부분까지 깨끗하게 유분을 제거해야 한다. 컬러링의 순서는 Base coating 1회 → Polishing 2회 → 컬러수정 → Top coating 1회 → 최종수정의 순서로 한다. 베이스코트는 착색을 방지하고 발림성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도포하며 컬러링의 마지막에 컬러의 유지와 광택을 위해 톱코트를 도포한다. 네일 보강제(Nail Strengthner)를 바를 시에는 베이스코트를 도포하기 전에 사용한다.

필요지식은
해당 NCS의 지식을 토대로 해당 학습에 대한 이해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지식을 제시하였습니다. 필요지식은 수행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여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후 수행순서 내용과 연계하여 교수·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3 평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내용	평가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킬러링 매뉴얼 이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네일 폴리시 색상의 칩착을 막기 위한 베이스코트를 아주 얇게 도포할 수 있다.			
	작업 매뉴얼에 따라 네일 폴리시를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다.			
	작업 매뉴얼에 따라 네일 폴리시 도포 후 컬러 보호와 광택 부여를 위한 톱코트를 바를 수 있다.			

평가 방법

- 작업장 평가

학습내용	평가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킬러링 매뉴얼 이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네일 폴리시 색상의 칩착을 막기 위한 베이스코트를 아주 얇게 도포할 수 있다.			
	작업 매뉴얼에 따라 네일 폴리시를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다.			
	작업 매뉴얼에 따라 네일 폴리시 도포 후 컬러 보호와 광택 부여를 위한 톱코트를 바를 수 있다.			

피드백

- 작업장 평가
 -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여 수정사항을 제시하고 수정 부분을 인지하도록 한다.

평가는

해당 NCS 능력단위 평가방법과 평가 시 고려 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수자 및 학습자가 평가항목 별 성취수준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준거는

학습자가 해당 학습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단위수업 시간에 평가항목 별 성취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NCS 능력단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였으며, 평가 준거에 따른 평가방법을 2개 이상 제시하였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체크리스트, 작업장 평가 등이 있으며, NCS의 능력단위 요소 별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평가 후에 학습자들에게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여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학습 결과가 미진한 경우,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자료

참고자료

- 김미원(2011). 『Nail Study』. 서울: 사)한국네일저지서비스협회.
- 민방경(2015). 『미용사(네일)평가』. 서울: 예문사.
- 박은주(2014). 『네일미용』. 서울: 정담미디어.

참고자료는

해당 학습모듈의 필요지식에 대한 출처와 인용한 참고 자료 및 사이트를 제시하였습니다.

5. 활용 서식/부록

활용서식

프리페이지 형태 실습지

1. 프리페이지 형태의 이해

모양	이름	특징
	스퀘어 네일 (Square nail)	-강한 느낌의 사각형태 -세일의 양끝 모서리 부분이 90° 사각의 형태이다. -발톱의 형태 활용 -내인성 발톱의 보정시에 적용

활용서식은

평가 서식, 실습시트 등 교수학습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서식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과제 진행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서식을 해당 학습모듈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거나 기존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부록

네일 기본관리 도구와 재료 목록

목록	비고	준비
위생가운	흰색	작업자 착용
위생 마스크	흰색	작업자 착용
보호안경	투명한 렌즈 (안경으로 대체 가능)	작업자 착용
재료정리함	재질, 색상 무관	작업대

부록은

활용서식 이외에 교수학습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제시하였습니다.

[NCS-학습모듈의 위치]

대분류	경영 · 회계 · 사무
중분류	재무 · 회계
소분류	재무

세분류

예산	능력단위	학습모듈명
자금	자금계획 수립	자금계획 수립
	자금조달 준비	자금조달 준비
	자금조달	자금조달
	자금운용	자금운용
	자금정보 제공	자금정보 제공
	재무위험관리	재무위험관리
	성과분석	성과분석

차 례

학습모듈의 개요	1
학습 1. 가용자금 파악하기	
1-1. 가용자금에 대한 파악	3
• 교수·학습 방법	13
• 평가	14
학습 2. 자금운용방안 수립하기	
2-1. 자금운용기준 수립	15
2-2. 자금운용계획 수립	22
• 교수·학습 방법	50
• 평가	51
학습 3. 자금지불하기	
3-1. 자금지불의 실행	53
3-2. 자금지불 후 사후관리	62
• 교수·학습 방법	73
• 평가	74
참고 자료	76
활용 서식	77
부 록	90

자금운용 학습모듈의 개요

학습모듈의 목표

자금계획에 따라 기업의 내·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을 목적에 맞추어 지불하고 관리할 수 있다.

선수학습

종합자금계획서 작성, 초과자금의 가용자금 운용, 금융상품의 이해, 투자활동자금계획, 수표발행의 개념, 제권판결과 공시최고의 개념

학습모듈의 내용 체계

학습	학습 내용	NCS 능력단위 요소		
		코드번호	요소 명칭	수준
1. 가용자금 파악하기	1-1. 가용자금에 대한 파악	0203010204_14v2.1	가용자금 파악하기	4
2. 자금운용방안 수립하기	2-1. 자금운용기준 수립 2-2. 자금운용계획 수립	0203010204_14v2.2	자금운용방안 수립하기	4
3. 자금지불하기	3-1. 자금지불의 실행 3-2. 자금지불 후 사후관리	0203010204_14v2.3	자금집행하기	3

핵심 용어

가용자금, 초과여유자금, 기간별여유자금, 자금지불스케줄표, 자금조달스케줄표, 자금운용일정표, 금융투자상품,

학습 1 가용자금 파악하기(LM0203010204_14v2.1)

학습 2 자금운용방안 수립하기(LM0203010204_14v2.3)

학습 3 자금지불하기(LM0203010204_14v2.3)

1-1. 가용자금에 대한 파악

학습 목표

- 조달된 자기에 따라 자금운용의 실행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 실행이 결정된 자기에 대하여 기간별 소요자금을 산출할 수 있다.
- 선출된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파악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① 조달된 자기에 따라 자금운용의 실행 여부 재검토

기업이 일 년간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업의 어떠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를 예측하고 하게 된다. 그 이후 조달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고 결정된 조달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측한 후 향후 조달될 자금과 지불될 자금의 매칭구조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을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의 예측일 뿐이다. 사업계획상 실행하기로 한 사업이 실제 사업 실행 단계에서 환경의 변화로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고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다. 또 사업계획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에 비해 조달된 자금의 규모가 적을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② 실행이 결정된 자기에 대해 기간별 소요자금 산출

조달된 자기에 따라 자금운용의 실행 여부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이 지불되는 자금의 지불 시기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에 전체적인 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자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각 부서별로 실제 자금지불 시기에 대한 확정적인 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자금과 부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해야 한다.

1. 소요자금의 파악

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의 경우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세금 및 각종 용역비(회계감사용역비, 노무용역비, 세무용역비 등)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비예산표를 참고하여 지불비용을 예측한다. 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비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행하기로 결정한 사업부서로부터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아 그 실제 집행될 그 자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2. 자금지불 스케줄표 작성

실제 집행될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게 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자금집행의 일정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금지불 스케줄표를 작성해야 한다. 자금지불 스케줄표를 작성 시 단순히 이번기에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금지불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업연도부터 계속 이어져온 정기적인 자금지불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 스케줄 표는 회사에 따라 일단위, 월단위, 분기단위로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위의 자금스케줄 표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매월 말일 다음 달의 자금 스케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③ 산출된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규모와 시기를 완전하게 일치하도록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또 사업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원자재가격 상승, 제도의 변화, 수요의 변동, 사고·재해 등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초기에 적정하다고 산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소요 시기 등을 산정할 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피드백 부분은 결국 초과자금(여유자금)이 되게 된다.

1. 여유자금의 파악

기업은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을 통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유자금은 초과조달 여유자금과 기간별 여유자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초과조달 여유자금

초과조달 여유자금은 기업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된 자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조달된 자금이 더 클 때 발생하는 초과자금이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실제 소요되는 자금과 조달하는 자금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자금

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경우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여유분을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초과조달 여유자금이 생겨나는 이유이다.

(2) 기간별 여유자금

기간별 여유자금은 자금을 조달한 시점부터 실제 자금이 사용되게 되는 시점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다. 기업은 자금 금액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시기에 있어서도 피드백을 두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시기의 차이가 크게 될 경우 그 자문에 대한 소요비용(예를 들면 외부 차입의 경우 이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차이를 줄이고자 한다. 또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 외에 내부에서 조달하는 자금도 실제 기업이 사업을 위한 자금지불 이전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기간별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기간별 여유자금의 경우 조달 후 사용 시기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단기자금운용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수행 내용 / 가용자금 파악하기

재료·자료

- 중·장기 사업계획서, 부문별 사업계획 내역서, 장단기 자금조달 계획서, 과거 연도 사업 보고서

기기(장비·공구)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계산기, 문서 제작 도구
- 회계 프로그램, 자금운용 프로그램

안전·유의 사항

- 없음

수행 순서

① 기간별 소요자금을 산출하여 본다

자금을 지불하기 위한 스케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시기별로 얼마의 자금이 지불 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1. 사업부서별 신규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소요자금이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자금인지 아니면 한번에 전체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자금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부서로부터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파악 방법은 해당 부서에게 사업과 관련된 자금 스케줄표에 대한 작성을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품의서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여 스케줄을 자체 작성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부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자금 스케줄표와 사업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부서에서 준 자금 스케줄 표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금 신청서

2015. . . .

수 신 : 자금운용팀장

발 신 : 영업3팀 팀장

(영업 3팀)의 신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을 집행 예정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금 집행 예정 내역

구 분	내 역			
신청금액	금삼백십억원(₩31,000,000,000)			
신청사유	○○○시 ○○○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청근거	2015. 01. 27. 사업계획 승인			
집행내역	일자	집행금액	집행사유	비고
	2015. 5월중	팔십억원	토지매매잔금	
	미정	이십억원	인허가 비용	인허가 완료시 지급
	미정	이백일십억원	기성비	시공사 기성율에 따라 지급
참고자료	1. 사업관련 품의서 2. 사업계획서 2. 자금집행예정 상세내역 3. 사업관련 계약서			

끝.

[그림 1-1] 자금 신청서

2. 실제 투입자금과 예비자금을 분류하여 본다.

예비자금은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제 투입될 것이라 예측되는 비용 외에 특별한 이벤트 발생이나 비용계산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예측한 비용보다 더 많은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산정하는 자금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피드백 역할을 하는 자금으로서 대다수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비용이다. 사업이 일정에 따라 투입되는 자금의 경우 해당 사업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 그 투입시기를 예측할 수 있지만 예비자금의 경우 그 투입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한 이벤트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자금 이므로 자금지불 스케줄표를 작성 시 이를 감안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자금지불 스케줄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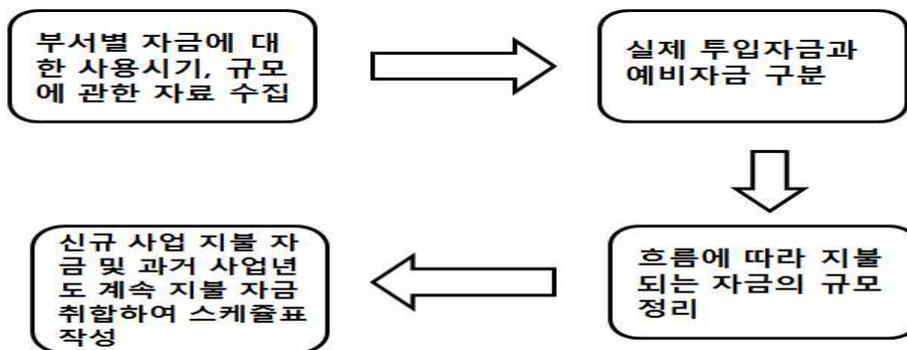
각 부서별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 스케줄표를 받았다면 그 스케줄 표를 통하여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소요될 자금의 규모, 비정기적으로 소요될 자금의 규모를 체크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자금지불 스케줄 표를 작성한다. 각 부서별로 받은 자금 스케줄표의 경우 그 사업에 관련된 자금 스케줄표이지만 이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은 회사 전체에 대한 자금 스케줄 표이다. 사업부서별로 소요자금에 대한 자료를 수령한 후 지불시기와 실제 투입자금인지 예비자금인지를 구별하여 작성한다. 자금지불 스케줄표는 연, 분기, 월, 일 단위로 작성이 가능하다. 연과 분기별로 작성된 자금지불 스케줄표는 연과 분기의 전반적으로 기업의 필요자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며 월과 일 단위의 자금 스케줄표는 향후 실제로 지불할 자금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자금스케줄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각 부서별로 확정된 신규사업 자문에 대해 사용시기 및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한다.
- (2) 부서별로 수집한 자금실행 정보와 관련하여 실제 투입자금과 예비자금을 구분한다.
- (3) 실제 투입자문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불되는 자금의 규모를 표로 정리한다.
- (4) 부서별로 작성한 표와 과거 사업연도부터 계속 지불되고 있는 기 사업 투입자금 스케줄을 취합하여 전체 표로 완성한다.

<표 1-1> 분기별 자금스케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불비용	신규사업1	5,000	1,850	1,050	1,050	1,050
	신규사업1예비비	650	-	-	-	-
	기존사업	700	300	300	100	-
	신규사업2	9,500	5,000	1,000	2,000	1,500
	신규사업2예비비	500	-	-	-	-
	투자사업1	5,000	-	5,000	-	-
	경비	120	30	30	30	30
	지불 자금 계	21,470	7,180	7,380	3,180	2,580



[그림 1-2] 자금지불 스케줄표 작성 흐름도

<표 1-2> 월별 자금지불스케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사업1	5,000	1,000	5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신규사업1예비비	650	-	-	-	-	-	-	-	-	-	-	-	-
기존사업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지 불 비 용	신규사업2	9,500	-	-	5,000	-	1,000	-	1,000	1,000	-	1,000	500
	신규사업2예비비	500	-	-	-	-	-	-	-	-	-	-	-
	투자사업1	5,000	-	-	-	5,000	-	-	-	-	-	-	-
	경비	1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지불 비용 계	21,470	1,110	610	5,460	5,460	1,460	460	1,460	360	1,360	360	1,360	860

② 산출된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확정된 조달자금과 지불이 확정된 사업자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초과조달 여유자금과 조달자금의 조달시기와 지불예정인 사업자금의 지불시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간별 운영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1. 초과조달 여유자금을 산출한다.

초과운용자금은 기업이 실제 사업에 소요하고자하는 자문에 비해 조달된 자금이 큰 경우 발생한다. 초과자금의 경우 확정된 조달자금과 실행이 결정된 소요자금의 차를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계획된 필요자문에 비해 더 많은 자금이 조달되었으므로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표 1-3> 초과자금 산출

	구분	합계(단위 : 백만 원)
자금조달	금융기관차입	10,000
	내부조달1	6,000
	내부조달2	6,000
	계	22,000
지불비용	신규사업1	5,000
	신규사업1예비비	650
	기존사업	700
	신규사업2	9,500
	신규사업2예비비	500
	투자사업1	5,000
	경비	120
	계	21,470
초과자금(자금조달 - 지불비용)		530

<표 1-3>를 보면 기업인 사업연도동안 필요한 자금은 214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내부조달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하여 기업이 조달하기로 한 확정된 금액은 220억원이다. 초과자금은 조달이 확정된 자금 220억원과 사업연도 동안 필요한 자금 214억7,000만원의 차이인 5억3,000만원이 된다.

2. 기간별 여유자금을 산출한다.

기간별 여유자금은 자금을 조달한 시점과 조달된 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지불되는 시점의 기간별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기간별 여유자금의 경우 사업을 위하여 기업이 조달한 자금이 기업에 입금되는 시점과 본래 사업목적에 따라 기업에서 자금이 출

금되는 자금지불 시점까지가 여유자금의 운영시기로 초과조달 여유자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유자금에 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짧다.

(1) 기간별 여유자금 산출방법

기간별 여유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확정된 조달자금의 규모와 시기와 관련한 스케줄표를 작성한다.

(나) 지불이 확정된 사업자금에 대한 스케줄표와 조달자금의 스케줄표를 취합한다.

(다) 취합된 스케줄표상 각 시기별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산출한다.

이러한 사항을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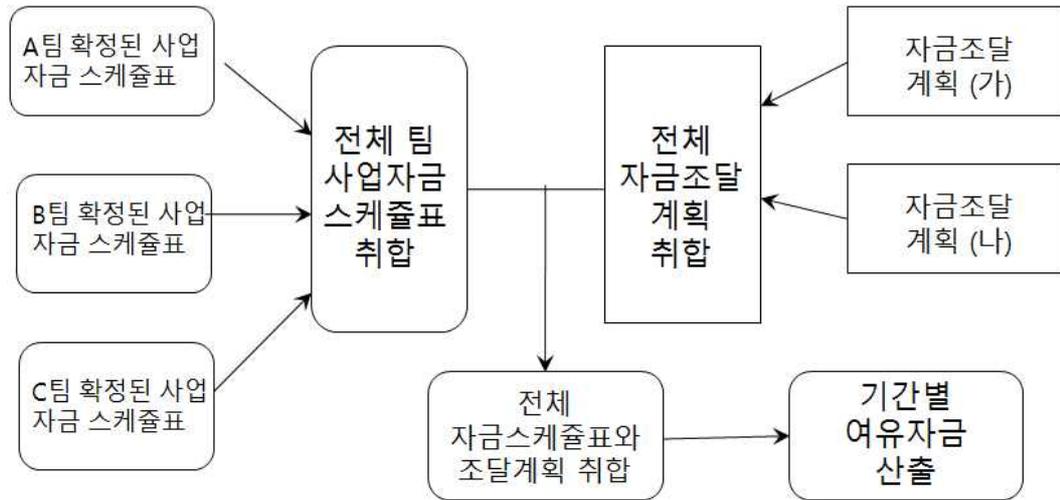
<표 1-4> 기간별 운영자금 (단위 : 백만 원)

구분		1월	2월	3월
자금조달	금융기관 대출	10,000		-
비용지불	신규사업지불			10,000
현금흐름	기초	-	10,000	10,000
	조달	10,000		
	지불	-	-	10,000
기말(여유자금)		10,000	10,000	-

<표 1-4>에서 보면 기업은 신규사업을 위한 100억 원을 1월에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였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상 이 자금의 조달시기는 3월이다. 따라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위해서 실제 자금이 지불되는 3월까지 약1개월 동안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원은 약 1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다.

3. 기업의 전체적인 단기 여유자금을 파악한다.

기업의 전반적인 여유자금을 산출하는 것은 기업이 지불하기로 확정된 사업자금의 스케줄과 자금이 조달하기로 한 조달자금의 스케줄을 취합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기간별 여유자금과 기업의 한 사업연도 동안 필요한 자금과 조달하기로 확정된 조달자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초과여유자금을 구함으로써 기업이 한 사업연도에서 단기적으로 운용 가능한 여유자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3]기간별 여유자금 산출 흐름도

수행 tip

- 본 사항에서 말하는 여유자금의 운용은 장기간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운용이 아니라 조달과 지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대한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표1-5> 사업연도 여유자금 산출흐름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융기관차입	10,000	-	10,000	-	-	-	-	-	-	-	-	-	-
자금 조달													
내부조달1	6,000	6,000	-	-	-	-	-	-	-	-	-	-	-
내부조달2	6,000	-	600	-	5,400	-	-	-	-	-	-	-	-
계	22,000	6,000	10,600	-	5,400	-	-	-	-	-	-	-	-
(누적)		6,000	16,600	16,6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지불 비용													
신규사업1	5,000	1,000	5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신규사업1예비비	650	-	-	-	-	-	-	-	-	-	-	-	-
기존사업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신규사업2	9,500	-	-	5,000	-	1,000	-	1,000	-	1,000	-	1,000	500
신규사업2예비비	500	-	-	-	-	-	-	-	-	-	-	-	-
투자사업1	5,000	-	-	-	5,000	-	-	-	-	-	-	-	-
경비	1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계	21,470	1,110	610	5,460	5,460	1,460	460	1,460	360	1,360	360	1,360	860
현금 흐름													
기초	-	-	4,890	14,880	9,420	9,360	7,900	7,440	5,980	5,620	4,260	3,900	2,540
조달	22,000	6,000	10,600	-	5,400	-	-	-	-	-	-	-	-
지불	20,320	1,110	610	5,460	5,460	1,460	460	1,460	360	1,360	360	1,360	860
사업유보비	1,150												
기말(기간별 여유 자금)		4,890	14,880	9,420	9,360	7,900	7,440	5,980	5,620	4,260	3,900	2,540	1,680
초과조달자금	530												

학습 1 교수·학습 방법

교수 방법

- 자금집행 스케줄표의 작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 사업연도별 여유자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유자금산출흐름표의 작성 실습하여 여유 자금 산출 방법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한다.
- 학습자들이 초과운용자금과 기간별 여유자금의 개념과 필요 지식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예비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비비를 설정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산출하였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학습 방법

- 월별자금집행 스케줄표를 작성 이유에 대해서 숙지하여 본다.
- 사업연도 여유자금 산출 방법을 숙지하고 여유자금산출흐름표를 작성하여 본다.
- 초과여유자금과 기간별 여유자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산출방법을 기술하여 본다.
- 예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비비를 설정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산출하였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여 본다.

학습 1 평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학습목표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가용자금에 대한 파악	- 조달된 자기에 따라 자금운용의 실행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 실행이 결정된 자기에 대하여 기간별 소요자금을 산출할 수 있다.			
	- 선출된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파악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실습하기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가용자금에 대한 파악	- 조달된 자기에 따라 자금운용의 실행여부 재검토			
	- 실행이 결정된 자기에 대하여 기간별 소요자금 산출			
	- 선출된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여유자금 파악			

피드백

1. 실습하기

- 초과조달 여유자금의 경우 지불할 금액과 조달된 금액의 차로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기간별 여유자금의 경우 사업연도 여유자금 산출흐름표를 작성해야지만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용자금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사업연도 여유자금 산출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만약 여유자금 산출흐름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월별 자금지불스케줄표 작성 후 월별 여유자금산출흐름표 작성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학습 1	가용자금 파악하기(LM0203010204_14v2.1)
학습 2	자금운용방안 수립하기 (LM0203010204_14v2.3)
학습 3	자금지불하기(LM0203010204_14v2.3)

2-1. 자금운용기준 수립

학습 목표 • 파악된 여유자금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용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① 파악된 여유자금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용기준을 수립

1. 자금투자대상 종목의 기준수립

기업은 주 사업목적 외 투자활동을 수행하거나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규정되는 경우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규정되는 경우는 금융기관같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업 이외에 부동산 매입과 같은 경우 사업목적 외의 부동산 외에는 그 취득을 규제하고 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투자시 고려사항과 절차 등을 지침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1)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항은 여유금을 운영하는 방법, 투자가능 대상 및 한도, 보유 제한사항,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공익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한도, 운영처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본래 목적 외의 사업에 운영보다 기업 본래 목적 사업을 집중하게 하여 공익적인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규정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정기

적인 회계감사 이외에 국가에 소속된 상위기관(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표2-1>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규정 예(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표2-2>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규정 예(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① 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예탁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2) 기업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정된 규정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이 광의적인 개념의 규정이라 한다면 기업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정된 규정(이하 자체 규정)의 경우 협의적인 규정이며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자체규정의 경우 투자하는 투자대상이 되는 목적물, 투자한도, 투자제한사항, 손실 시 의무매각하는 조건, 운영 시 현황 보고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표 2-3>의 경우 한 기업의 내부적인 여유자금운용규칙에 대한 목차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적으로 위에서 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 또 강제되는 규정과 별도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의 경우 기업이 인위적으로 그 규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나 자체 규정의 경우는 기업이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2-3> 기업 여유자금 운영규칙(유가증권)

제 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2장 투자한도

- 제 4 조 총투자한도
- 제 5 조 주식 투자한도
- 제 6 조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 투자한도
- 제 7 조 파생상품 투자한도

제 3장 투자종목의 제한

- 제 8 조 상장주식
- 제 9 조 코스닥주식
- 제 10 조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
- 제 11 조 채권
- 제 12 조 파생상품

제 4 장 의무매각

- 제 13 조 의무매각

제 5 장 보고의무 및 운용의 독립성

- 제 14 조 유가증권 운영현황의 보고
 - 제 15 조 회계처리 및 평가 등
 - 제 16 조 운용의 독립성
-

수행 내용 / 자금운용기준 수립하기

재료·자료

- 자금운용 규정(지침), 자금운용 매뉴얼

기기(장비·공구)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계산기, 문서 제작 도구

- 회계 프로그램, 자금운용 프로그램

안전 · 유의 사항

- 자금운용담당자는 기업내부의 자금운용기준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수행 순서

① 파악된 여유자금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용기준을 수립한다.

1.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에 맞춰 투자대상 및 한도 결정하기.

기업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업체라면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그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표2-4>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식(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
2. 동일회사의 주식과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3. 동일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
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다만, 제40조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이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 건별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이 경우 제4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7.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9. 해외 증권(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위 표는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규정 중 유가증권보유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기술된 사항이다. 만약 예를 들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이 500억 원이라면 위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투자 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산출하면 <표2-5>와 같다.

<표2-5>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의거 자기자본 500억 저축은행 유가증권 한도

구분	산 식	한도액 (백만 원)
유가증권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100%	50,000
주식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50%	25,000
동일회사 주식	자기자본의 20%	10,000
동일회사 회사채	자기자본의 20%	10,000
동일회사 주식, 회사채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20%	10,000
동일회사 주식 보유한도(주식 수 기재)	발행주식총수의 15%	발행사별 상이
비상장, 비등록 주식 및 회사채	자기자본의 10%	5,000
동일 비상장회사 주식 보유한도(주식 수 기재)	발행주식총수의 10%	발행사별 상이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	자기자본의 5%	2,500
파생결합증권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10%	5,000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20%	10,000
해외증권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5%	2,500

<표2-5>에 의하면 위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인 500억 원이다. 또 총 유가증권 중 주식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인 250억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위 상호저축은행이 여유자금 200억 원을 유가증권을 통해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위 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을 3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주식이 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위 기업은 유가증권 보유한도인 500억 원 중 300억 원을 이미 소진하였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도는 200억 원이다. 또 이 200억 원을 주식투자를 통해서 운영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이미 주식으로 200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50억 원이다. 그러므로 동 기업의 경우 200억 원 중 50억 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 150억 원의 경우 다른 투자대상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 투자대상에 대한 종류나 한도에 대해 제한을 받는 기업의 경우 상위 감독기관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만약 위반 시 적게는 벌금이나 많게는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되므로 자금운영 시 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기업에 내부규정에 의한 맞춰 투자 대상을 결정한다.

기업 내부규정은 기업이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세부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표2-6> 여유자금 운영과 관련한 기업 내부규정 중 유가증권 투자종목의 제한

제 2 장 투자종목의 제한

제 8 조(상장주식)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투자를 제한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시현
2. 최근 6개월 일평균거래량 5,000주 미만(단, 신규상장 후 6개월 미만 종목은 제외함)
3. 관리 및 감리대상 종목(단,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감리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제외함)
4.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제 9 조(코스닥주식)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코스닥주식은 원칙적으로 투자를 제한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시현
2. 최근 6개월 일평균거래량 5,000주 미만(단, 신규등록 후 6개월 미만 종목은 제외함)
3. 관리 및 감리대상 종목(단,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감리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제외함)
4.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제 10 조(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를 취득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1 조(채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투자를 제한한다. 다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 신용평가등급이 BB+ 이하인 회사채
2. 단기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기업어음

제 12 조(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투자는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투자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표 2-6>는 여유자금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제정한 자체 규정 중 유가증권 투자종목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다. <표2-4>의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과 <표2-6>의 내부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감독규정이 투자가능 종목 및 수량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는 반면 자체 내부규정의 경우 실제로 어떠한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감독규정과 내부규정을 취합하여 고려하면 실제 어떤 자산에 여유자금을 운영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를 보면 위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와 주식 보유한도에 의해 주식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50억 원이다. 이 50억 원의 경우 위 규정의 제8조와 제9조에 의해 대상종목을 결정해야 하며 나머지 150억 원의 금액도 유가증권을 통해 운영한다 하면 제10조,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수행 tip

- 자금운용 시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이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투자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기업 내부에서 정한 규정에만 위배되는 경우 기업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투자할 수 있다.

2-2. 자금운용계획 수립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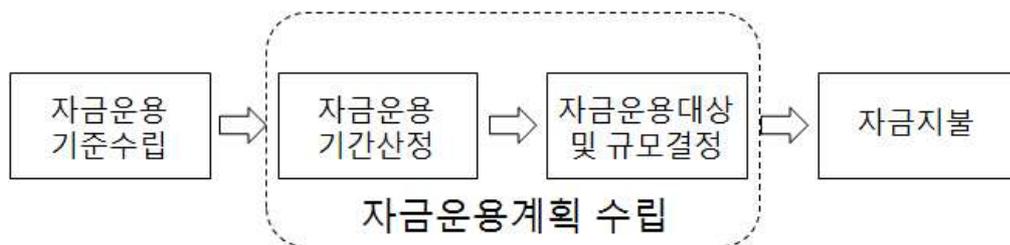
- 수립된 여유자금 운용기준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수립된 장단기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자금운영일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① 수립된 여유자금 운용기준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자금을 운영하게 될 대상 및 규모, 자금의 수익률 등이다. 이러한 사항은 하나만이 아닌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기업이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방법으로 전문투자회사에 자금운영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금운영사무를 위임하는 이유는 전문투자회사에 맡겨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실제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 자금운용계획 수립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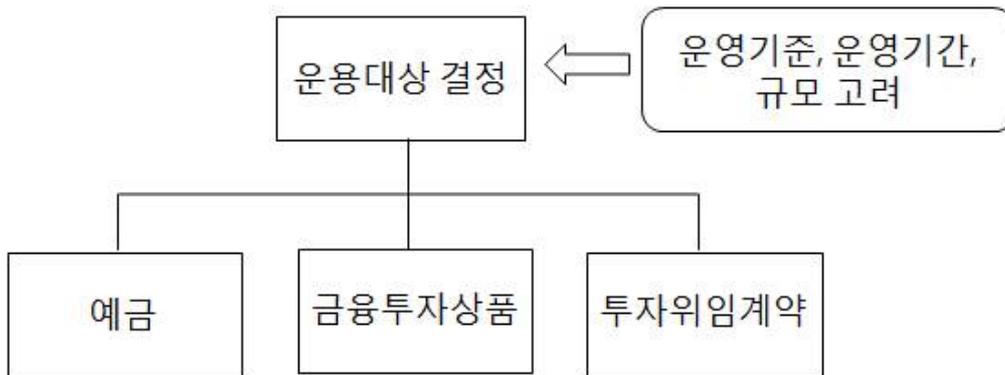
1.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산정하기

필요 자금보다 조달 자금이 더 커서 발생하는 초과 여유자금의 운영 가능 기간은 조달된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시점까지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기간별 여유자금의 운영기간은 조달된 자금의 시점과 실제 그 자금을 조달한 목적에 투입되는 시점의 차이로 발생하게 된 기간이다. 사업연도 여유자금 산출내역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매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조달 및 지불되며 여유자금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또 이를 통하여 월초의 자금 사정과 그 월의 지불 금액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의 규모와 자금운영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으로 운영대상에 대한

환가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은 주식을 매도한 거래한 날을 포함한 3 영업일이 되는 날이며 펀드와 같은 상품의 경우 별도의 환가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운영기간만을 감안하고 상품을 환가하는 환가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자금의 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간에 환가기간을 감안하여 평가해야 한다.

2. 자금을 운영하게 될 대상 및 규모 결정하기



[그림 2-2] 자금운용대상 결정

여유자금을 운영할 대상 및 규모는 기업이 준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운용 기준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상품, 부동산, 동산 등 다양한 자산이 있으며 그 대상의 환가성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유자금의 경우 실제 조달한 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가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집중하는 편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부동산, 동산 등과 같은 환가성이 낮은 상품보다는 금융상품과 같은 환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상품은 크게 예금과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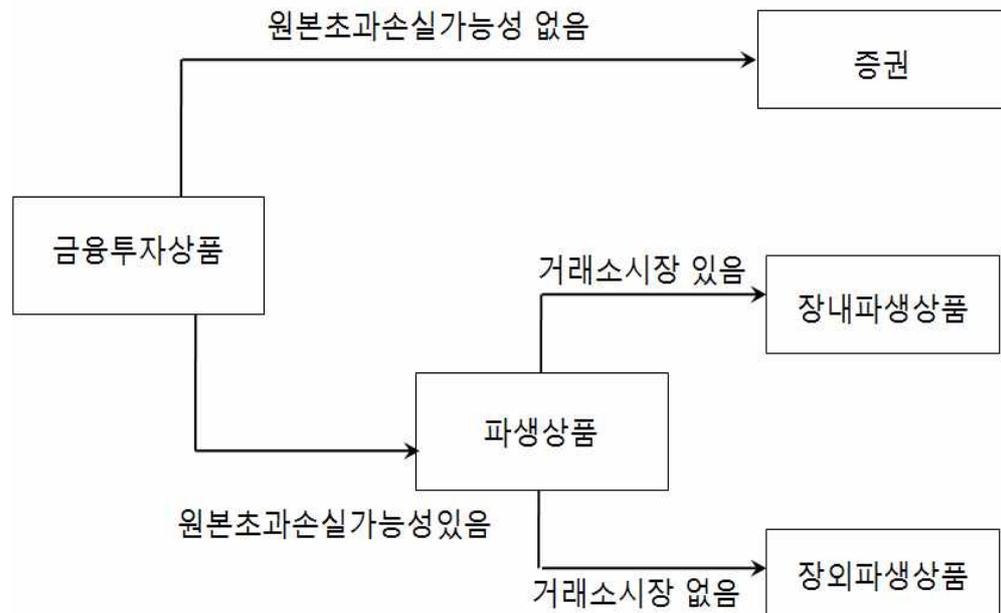
(1) 예금

예금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금원을 예치할 경우 미리 약정한 이자율에 근거하여 그 수익을 지불하는 것이다. 예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의 손실이 없으며 파산한다 하여도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을 보장하며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금리를 공시하며 이러한 각 금융기관에 이해 자체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2)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불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투자성 즉 원본손실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크게 증권, 파생상품, 펀드 등으로 분류가 되며 여기서 변형이 되어 다양한 상품군으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는 전통적인 증권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과 새로운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분증권인 주식과 채무증권인 채권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림 2-3]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가)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의 하나이다.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의 하나이므로 금융시장에서 기대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식시장은 증권이 발행 매출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이 매매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1) 발행시장

주식발행시장은 발행주체인 기업이나 정부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새로이 모집하고 매출하는 시장이다. 또 이미 발행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대주주나 정부가 일반투자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도 발행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 유통시장

주식의 유통시장이란 발행된 증권이 매매·거래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자금을 운용하거나 또는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조직적·구체적 시장이다. 유통시장은 신규주식이 발행되는 발행시장과는 달리 누구나 매매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수의 매매당사자를 위해 편의상 중개인(위탁매매인)이 개입하여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가 대표적인 조직화된 유통시장이다.

<표2-7> 유통시장구조

구분	규제영역			비규제영역	
	조직화된 시장		제3시장 (프리보드)	조직화되지 않은 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금융투자회사 장외거래	기타장외거래
거래대상	상장주식 상장채권 선물·옵션	상장주식	지정주식	채권 주식(단주)	투자자 간 직접거래 비상장·비등록주식
참가자	거래소회원	거래소회원	협회회원	금융투자회사 투자자	투자자
매매방법	경쟁매매	경쟁매매	상대매매	상대매매	상대매매
운영주체	거래소	거래소	협회	금융투자회사	-

출처 : 「금융투자분석사」 금융투자교육원저 표1-5 유통시장구조

(나) 채권시장

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표시 증권이다. 채권은 기업어음과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의 분류상 채무증권에 포함된다.

1) 채권발행시장

채권의 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채권발행자는 신규 창출한 채권을 직접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전문적인 발행기관에게 전반적인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이 발행기관이 발행채권을 투자자들에게 매출하게 한다. 전자를 직접발행방식 그리고 후자를 간접모집발행방식이라고 한다.

2) 채권유통시장

채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만기 전까지 채권발행자에게 원금의 상

환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 투자자는 투자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채권의 유통시장은 채권의 만기 전에 현금화하려는 기존 투자자들과 이들에 의해 공급되는 채권에 투자하려는 새로운 투자자들 간의 수요에 의해 채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발행시장을 제1차 시장이라 한다면 유통시장은 제2차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거래는 대부분 장외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상품을 말하는데,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 수익률이 결정된다. 파생상품은 크게 금융선물거래와 옵션거래로 분류된다.

1) 금융선물거래

선물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거래 대상품과 대금이 교환되는 매매예약거래의 일종으로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에 대응되는 거래이다. 이와 같은 매매예약 거래는 크게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는 경제적인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거래 실행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선도거래는 선도금리계약이나 선물환 거래와 같이 거래 당사자간에 사적인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일에 매매 대상물과 대금이 인수도됨으로써 계약이 종결된다. 또 계약이행 여부는 오직 당사자간의 신용에 의해 결정된다.

선물거래는 공인된 거래소 내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청산소라는 공적 기구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보증된다. 선물거래에서는 계약 만기일에 상품을 인수도 하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만기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을 청산하고 매매가격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선물거래는 계약 시점에서 합의된 가격과 인수도일 이전 특정시점에서의 시장가격의 차액을 획득하기 위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거래 대상인 채권이나 통화가 실제로 만기일에 인수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만기 이전에 반대거래에 의해 계약이 소멸된다.

2) 옵션거래

옵션이란 어떤 상품의 일정량을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옵션거래는 해당권리는 매매하는 것이다. 옵션거래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이 장래에 있기 때문에 광의의

선물거래라 할 수 있다. 옵션거래는 장래 대상물의 가격에 대한 예상이 적중할 경우 옵션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헤지기능과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옵션권리를 포기하고 현물가격에 의한 거래를 통해 이익추구가 가능한 투자기능의 양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래의 금융자산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우 적합한 거래이다.

(라) 펀드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즉, 펀드는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투자자산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실적 배당형 간접투자 상품이다.

3. 투자운용회사와의 계약

여유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투자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업무를 일부나 전체를 위임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담당자의 실제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투자위임계약을 통한 운용

일반적으로 투자운용회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운용금액과 운용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부 위임하는 방법이다. 위 방법의 경우 기업은 투자운용회사와 계약 체결 시 투자할 금액, 기간, 운용대상, 목표수익율과 목표수익율 미달 시 패널티 조항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 경우 매월 투자 운용실적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받아 보면서 자금의 운용진행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자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이 당초 약정했던 것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와 투자회사가 제시한 예상 목표수익율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위임계약 형태의 경우 기업이 단독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기 안 용 지

분류기준 문서번호							
시행일자	20XX. XX. XX	담당	대리	팀장	임원	임원	대표이사
기안일자							
보존년한							
기안부서 및 기안자	자금운용팀 홍길동					감사	
형 조							
제 목	여유자금 운용관련 유가증권 투자자문계약 체결의 건						
<p>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비너스투자자문(주)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투자자문 계약내용></p> <p>1. 계약금액 : 금 오십억원정 2. 계약기간 : 20XX. 2. 2 ~ 20XX. 2. 1 (12개월) (단,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 상호간 별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 3. 기본수수료 : 금 오천원정 (계약금의 1.0%) 4. 지급시기 : 투자자문계약일로부터 각 3개월, 6개월, 9개월이 경과한 각 말자와 계약만기일에 4회 균등분할하여 계산하고, 수수료는 각 계산일자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p> <p><투자자문의 대상></p> <p>1.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 2.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공개되는 주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5. 관계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자산 6. 기타 "갑"과 "을"이 사전협의한 유가증권</p> <p><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p> <p>1. "갑"의 계약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 2. "갑"의 계약자산운용자문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 3. 기타 계약자산운용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별첨</p> <p>- . 투자자문계약서(안) 1부. 끝.</p>							

[그림 2-4] 투자위임계약 기안서

(2) 투자자문계약을 통한 운용

두 번째는 특정한 투자 운영대상에게 선정에 대한 위임 및 자문을 얻는 방법이다. 투자운용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어떤 투자대상에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금액 시기와 회수 시기 등에 대한 자문을 얻는 방법이다. 운영방법에 대하여 전부 위임하는 방법의 경우 실제 투자를 운영하는 주체가 계약을 맺은 투자운용회사이지만 운영대상 선정 및 자문을 얻는 방법의 경우 투자 운용자체는 기업이 되며 투자운용회사는 특정한 종목의 투자에 대한 자문만을 할 뿐이다.

② 수립된 여유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자금운영일정표를 작성하기.

1. 여유자금운용계획안 확정하기

여유자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규에 맞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승인 절차는 상이하다. 내부 심사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후 계획안을 확정지게 되며 내부 결재를 통하여 승인을 받는 기업의 경우 전결자의 결재를 받아 계획안을 확정지게 된다. 만약 심의나 결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시 대체되는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담당	대리	팀장	임원	임원	대표이사
시행일자							
기안일자	20XX. XX. XX						
보존년한							
기안부서 및 기안자	자금운용팀 홍길동					갑	사
협 조							
제 목	중모주 수요예측과 청약 및 매매관련 리스크관리컨설팅 계약체결의 건						
<p>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는 기업중모(IPO)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비너스투자자문(주)과 중모주 수요예측과 청약 및 매매관련 리스크관리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품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리스크관리컨설팅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 비너스투자자문(주)의 역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되는 중모주식에 대한 기본적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해 수요예측 참여 컨설팅 (가격, 수량등) 3. 컨설팅수수료 : 년 2천만원(부가세 별도) <p>[별 첨] - 리스크관리 컨설팅계약서 1부 - 세부업무절차계약서 1부 끝.</p>							

[그림 2-5] 투자자문계약 기안서

2. 자금운용일정표 작성하기

자금운용일정표는 기업의 실제 사업목적에 대한 자금지불스케줄 상의 자금지불일정과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환매하는 기간이 같이 표시되어 한눈에 자금의 동향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운영한 자금을 대한 환매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조달한 본래 목적에 대한 자금지불에 차질이 생기므로 월별과 일별로 일정을 구별하여 작성하여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수행 내용 / 자금운용계획 수립하기

재료·자료

- 중·장기 사업계획서, 장단기 자금조달 계획서, 부문별 사업계획 내역서, 금융상품 투자설명서, 자금운용 규정(지침), 자금운용 매뉴얼, 과거 연도 사업보고서

기기(장비·공구)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계산기, 문서 제작 도구
- 회계 프로그램, 자금운용 프로그램

안전·유의 사항

-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예비비는 은 지불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자금운용담당자는 운영담당자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행 순서

① 수립된 여유자금 운용기준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영계획 수립한다.

1. 장단기 자금운영 기준에 따른 투자 규모 및 기간 산정하기.

여유자금의 운영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별 사용가능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별 사용 가능한 여유자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여유자금산출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표2-8> 사업연도 여유자금 산출내역 중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월초	-	-	4,890	5,880	420
조달	22,000	6,000	1,600	-	5,400
지불	20,320	1,110	610	5,460	5,460
현금흐름					
사업유보비	1,150				
월말(기간별 여유자금)		4,890	5,880	420	360
초과조달	530				

<표2-8>는 사업연도 여유자금을 산출한 표에서 일부를 추출한 내역이다. 위 표에서 보면 1월 조달과 지불 후 월말에 남게 되는 여유자금은 48억9,000만원이다. 그리고 위 기업은 2월 16억 원과 4월에 54억 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할 예정이며 2월에 6억 1,000만원 3월 54억6,000만원 4월 54억6,000만원의 자금 지불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매월말 기간별 여유자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2월 58억8,000만원, 3월 4억2,000만원, 4월 3억6,00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추론해보면 1월에 발생한 여유자금은 48억9,000만원 중 4월 이후까지 운영가능한 금액은 3억6,000만원이며 4월 자금지불까지 운영가능한 자금은 4억2,000만원, 3월 자금지불까지 운영가능한 자금은 48억9,000만원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의 운영가능 기간을 산출한다. 이러한 여유자금

의 규모와 운영 기간을 산출하여 이에 맞는 운영대상을 검토해 봐야 한다.

2. 여유자금 투자대상 후보 검토하기.

자금을 운용하는 기간과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자금을 운용할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유자금의 경우 실제 조달한 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전까지 사용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환가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러한 환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대표적 상품은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필요 지식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은 예금과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 상품은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만큼 그 거래 방식 또 다양하므로 투자대상 상품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은 금융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금융투자를 전문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대상 자산 또 다양하므로 일반적인 기업이 자금운영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을 검토할 때 전문금융사(증권사, 투자자문사, 은행 등)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금융사와의 미팅을 통해 운영자금의 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전문금융사의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금융사를 연결하여 준다.



1. 발행 개요

ABSTB/ABCP Terms & Condition _ 개요

발행인	OOOOOO 주식회사
신용등급	A2(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발행일	2015년 07월 20일
만기	2015년 11월 12일(9-1회차 ABSTB 기준)
기초자산	(주)OO(A2) 자금보증 대출채권
투자위험	(주)OO Default시 원금 손실위험
주관회사	OO증권

상품	구분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기간
ABSTB	7-1회	800억	2015-07-20	2015-09-20	92일
ABCP	7-2회	20억	2015-07-20	2016-03-20	274일

*발행 세부 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림 2-6] 증권사 투자상품 제안서

(1) 예금을 투자대상후보로 검토하기.

예금은 금융기관에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현금을 예치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예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거래용 인감(서명도 가능함)을 지참하여 내방하면 되며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거래용 인감, 그리고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각 금융기관별로 현금의 예치기간별 금리를 차등을 두어 공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리는 각 금융기관의 중앙회나, 연합회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MMDA와 같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예비비로서 항시 유지하여야 할 금원의 경우 위 수시 입출금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 후보로 검토하기.

(가) 증권시장의 거래방법 이해하기

증권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제3시장, 장외시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증권매매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이다. 일반 자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 투자자인 기업은 위탁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1) 매매거래시간

증권매매거래는 정규시장 9:00 ~ 15:00의 6시간과 시간 외 시장 15:10~15:40의 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2) 호가와 매매수량단위

호가는 투자자가 거래소에 자기명의로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기본적인 단위는 1주당 주식가격에 따라 5원, 10원, 50원, 100원등으로 되어 있다. 거래 수량의 기본 단위는 액면 5,000 원 기준으로는 10주단위이며 기본수량단위에 미달하는 단주는 장외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된다. 액면 5만 원 이상의 경우는 단주로 거래가 가능하다.

3) 매매가격의 지정

가격의 지정은 지정가 주문, 성립가 주문, 과량 주문의 방법에 의한다. 지정가 주문은 매매거래를 위탁할 때 최소한의 받아들일수 있는 가격을 정하여 주문하는 것이다. 성립가 또는 시장가 주문은 가격 지정 없이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는 주문으로 상·하한가가 형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 즉시 매매체결이 가능한 주문이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이란 지정가 주문이 종가 결정 전(14:50)까지 체결되지 않는 경우 미체결잔량에 대해서 종가 결정 시에 시장가 호가로 참여하는 조건부 형태의 주문을 말한다.

4) 결제방법

증권의 매매거래 형태는 일반적으로 실물거래와 선물거래로 구분된다. 선물거래는 매매계약의 시기와 현금 및 증권의 수도기일 사이에 일정한 시차가 있어서 결제기일 전에 증권의 반대매매를 하여 그 차금을 수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실물거래는 현물거래 또는 즉시거래라고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수도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화요일 주식 매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매매대금은 목요일에 받게 된다.

5) 위탁증거금, 수수료, 증권거래세

매수의 경우 현금, 매도의 경우는 당해 매도증권 또는 현금을 각각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다. 위탁증거금은 각 금융투자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증권을 사고 팔때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탁수수료의 징수율과 징수 방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주식 매도 시 매도가에 0.3%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채권 및 채권시장 이해하기

채권거래는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할 수 있다. 채권거래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분류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와는 달리 장외거래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1) 채권 용어

가) 액면가

채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이자산출 시 액면가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한다.

나) 표면이율

발행시점에 결정되어 채권 전면에 기재된 이율. 액면금액에 대해 연단위로 지불하게 되는 이자율을 말함.

다) 발행일과 매출일

채권이 신규 창출된 기준일을 발행일이라 하며, 매출일은 실제로 채권이 신규 창출된 날짜를 말한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발행일은 매월 말일이 되지만 실제 매출은 발행일이 속한 그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가 된다. 이때 발행일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매출일과 발행일의 일수차만큼 매입가를 할인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간에 만큼의 선취 이자를 지불하기도 한다.

라) 만기기간

채권의 발행일부터 채권원금을 상환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마) 경과기간

채권의 발행일(매출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바) 잔존기간

채권을 발행일에 매입하지 않고 이미 발행된 채권을 매매하게 될 경우 매

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 이자지불단위기간

이자지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하거나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상환하기도 한다. 만약 채권의 1,200만 원인 채권의 표면이율이 10%인 경우 1년의 이자는 120만 원이 되게 된다. 이러한 채권이 이자지불단위가 3개월일 경우 실제 이자지불은 3개월 단위로 300만 원씩 지불하게 된다.

아) 만기수익률

시장수익률, 수익률, 유통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채권의 수급에 의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이자율이다.

자) 단가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만기수익률에 의해 결정된 채권매매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액면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표시된다.

2) 장내거래

장내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집단경쟁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한다. 거래가능 채권은 상장채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거래시간 및 거래조건 등이 정해져 있다.

가) 매매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이외의 영업일이 거래일이이며, 거래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장된다.

나) 호가

채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호가라 한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매호가 가격호가로 이루어지는데 가격호가는 일반 채권의 경우 지정가 호가를 사용하고 호가수량단위는 액면 1만 원, 호가가격단위는 1원이다.

다) 매매수량

매매수량단위란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저액면금액이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액면 만 원당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액면 10만 원 단위로 매매를 체결한다.

라) 매매체결방법 및 거래의 결제

기본적으로 전산매매에 의한 자동매매방식으로 체결된다. 먼저 동시호가 혹은 매매재개 시에는 단일가격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이 이루어지고, 이후부터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에 의한 접속매매로 이루어진다. 매매 후에는 당일 결제를 통해 거래에 대한 수도결제가 이루어진다.

3) 장외거래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 이외에서 상대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채권거래를 채권의 장외거래라고 한다.

가) 거래대상채권

장외매매의 대상은 상장 및 비상장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단, 제1종국민주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및 지방도시철도채권은 소액국공채의 한국거래소 거래제도에 따라 액면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내거래를 통해 매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환사도 장내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매매장소 및 매매시간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 내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매한다.

다) 호가 및 가격 제한폭

수익률로 호가한 후, 액면 만 원당 수익률로 환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가격 제한폭은 없다.

라) 매매수량단위

제한 없다.

마) 결제방법

채권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익일부턴 30영업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익일결제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 장외거래 수수료율

위탁자간의 매도 매수를 직접연결시키는 중개매매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장외거래는 증권회사의 상품거래를 통한 자기매매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채권의 종류

가)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 ① 국채: 국채법 등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제 1종, 제2종 및 제3종 국민주채권, 재정증권과 국고채권 등이 있음.
- ②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발행. 시와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 공채와 서울도시철도공채, 인천, 대구, 대전, 광주의 도시철도 공채가 있음.
- ③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금융채로 분류하며 그 밖의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비금융 특수채로 분류함.
 - 금융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은행채권, 농협과 수협 발행채권이 이에 해당됨.

- 비금융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 중 한국전력,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비금융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함.

④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지불의 주체가 기업임.

나) 보증 여부에 따른 분류

① 보증사채: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을 발행회사 이외의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보장하는 회사채

② 무보증사채: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보증이나 물적담보의 제공 없이 발행회사가 자기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회사채

다) 이자 및 원금지불 방법에 따른 분류

① 복리채: 채권 발행 후 만기까지 이자지불 단위기간의 수만큼 복리로 이자가 재투자되어 만기 시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불되는 채권

② 단리채: 단리방식에 의한 이자금액이 원금과 함께 만기에 일시에 지불되는 채권

③ 복단리채: 채권발행 후 일정기간은 복리로 부리되다가 나머지 기간은 단리로 부리된 후 만기시점에 원금과 함께 지불되는 형태의 채권

④ 할인채: 만기 시까지 총 이자를 채권발행 혹은 매출 시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지불하는 형태의 채권

⑤ 이표채: 정해진 단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의 채권

(다) 파생상품에 대해 이해하기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금융선물거래 계약과 옵션거래의 경우 기본적인 거래 단위 및 거래 방법 등의 제약 때문에 기업이 직접투자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직접투자한 후 직접투자한 거래를 상품화하여 일반기업 및 기업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이러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록 간접적인 투자방식으로 투자하기는 하나 기본적인 상품의 종류 및 개별 특징은 자금운용담당자로서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 금융선물계약의 종류

가) 통화선물계약

통화선물계약은 약정한 환율로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해당 통화를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인수도 하는 계약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통화선물시장으로 성장한 시카고상업거래소의 국제통화시장에서는 유로, 호주달러,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일본엔, 스위스프랑 등을 대상으로 선물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다.

나) 단기금리선물계약

단기금리선물거래는 만기 1년 미만의 금리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계약이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요 금리선물상품으로는 1개월 유러달러(Libor), 30일 Federal Funds Rate, 3개월 T-bill, 3개월 유러달러, 1년 T-bill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계약을 들 수 있다.

다) 중장기금리선물계약

채권선물이라고도 불리는 장기금리선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금리변동 시에는 장기채권의 가격은 중기채에 비해 더 크게 변하게 된다. 금리변동에 따른 장기채권의 가격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어 가격변동에 대한 헤지수요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장기금리 선물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라) 주가지수선물계약

주가지수선물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종목 주식들의 대표적인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특정 주가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선물계약이다. 주가지수선물은 거래의 대상이 실물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선물계약의 만기일에 실물을 인수도하지 않고 현금에 의한 차액결제를 실시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옵션의 종류

옵션이란 옵션 매입자가 옵션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옵션 만기일 이전에 옵션매도자에게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두가지 권리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다. 옵션 매입자는 이러한 선택권을 보유하는 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입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옵션 매입자로부터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게 된다.

옵션은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구분된다. 콜옵션은 매입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매도자로부터 기준물을 매입하는 결과가 나타나며 콜옵션 매도자는 기준물을 매입자에게 매도하는 결과가 된다. 반면 풋옵션은 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면 기준물을 매도자에게 매도하는 결과가 나타나며 풋옵션 매도자는 매입자로부터 기준물을 매입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 거래 담보금을 어떤 식으로 청산소에 적립하느냐에 따라 증권식 옵션과 선물식 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식 옵션은 거래 당시 옵션 프리미엄 전액을 청산소에 적립하는 옵션을 말하며 선물식 옵션은 선물거래에 일일정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변동하는 옵션프리미엄의 차액만큼 청산소에 적립하는

옵션을 말한다.

(라) 그 외 금융상품 이해하기

1) 기업어음

어음은 상거래에 따른 지불대금을 약속어음의 형태로 발행한 상업어음과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유통을 위하여 자기 신용에 의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구분된다.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시장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무담보의 유통어음이 할인·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기업어음시장은 기업에 대하여는 담보없이 자기 신용을 기초로 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에게는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어음은 무담보거래가 원칙인 만큼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이 발행하며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

2) 양도성예금증서

CD란 은행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칭이다. CD란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예금증서이며 이것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이 양도성예금증서 시장이다. CD의 만기는 30일 이상인데, 91일이 일반적이며 예치기간 동안의 액면금액에 대한 이자를 차감하여 할인식으로 발행된다. 최저발행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객이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다. CD를 발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예금업무가 인정되고 있는 모든 예금은행이다.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장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이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의 금융거래이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RP시장이라고 한다.

RP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우체국 등이다. RP거래는 만기에 제한이 없으며 만기 이전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만기 이전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고객이 금융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4) 표지어음

표지어음은 은행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새로 발행한 약속어음이며,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원어음의

잔여만기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이다.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어음의 기초가 되는 원어음의 부도와 관계없이 지불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은행 명의로 발행하는 표지어음은 안전하며, 고객의 명의를 기재되는 기명식 어음으로 배서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자지불 방식은 양도성예금증서와 동일한 할인식이다.

5) MMF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인 은행과 증권회사 등을 통해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투자신탁 상품으로 주로 운량기업의 CP, CD, 국공채 등에 운용한다. 또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펀드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6) MMDA

은행권에서 직접 취급하는 투자신탁 상품으로서 비은행권의 MMF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한 단기금융상품이다. 제1금융권이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으나 수익률은 MMF보다 다소 낮으며, 수시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 특정금전신탁

은행이 취급하는 투자신탁상품으로 고객이 지정하는 특정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신탁이다. 즉, 고객이 운용지시서를 통해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투자실적배당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8) 수익상환채권

수익 상환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당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발행자에게 부여한 채권이다. 수익상환채권은 수익상환권(call option)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수익상환채권은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해당채권의 발행 수익률보다 낮아지면 채권 발행자가 수익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채권 투자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

9) 수익상환청구채권

수익상환청구채권은 수익상환채권과 반대로 만기일 이전에 당해 채권을 채권 발행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부여한 채권이다. 매수자는 수익상환청구채권을 매수 시 일반채권과 이 일반채권을 일정기간 안에 최초 협의한 금액으로 채권 발행자에게 되팔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10) 전환사채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s)는 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한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이다. 매수자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꾸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를 계속 보유 시 전환사채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마다 이자와 원금을 지불받게 된다. 대개 발행 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단가를 정해 놓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면 전환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가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음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11)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신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회사의 신규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취득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한 후 채권이 소멸되는 반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후에도 일반적으로 사채가 존속하게 된다. 또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주인수시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도 한다.

3. 여유자금을 운용할 투자대상 결정하기.

투자대상 후보 대상과 관련된 분석자료를 전문금융사에 요청하여 여유자금운영과 관련한 투자 실효성을 분석한다. 검토방법은 각 기업마다 방법이 달라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특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는지 그리고 투자금액대비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지, 환가 시 기한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투자대상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의사결정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각 회사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승인권자에 대해서 투자운영과 관련된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본문바로가기 (SKIP TO CONTENT)

KRX | 주식

마이페이지 ENGLISH 통합검색 검색

종목정보 거래동향 투자참고 순위정보 주식통계 기타상품 현재예뉴

종합정보 | 기업개요 | 시간대별 주가 | 일자별 주가 | 월별 주가 | 뉴스/공시 | 투자자별거래실적 | 회원사별매매현황 | 기관외국인동향 | 공매도거래현황 | 주식대용가

기타상품

신주인수권 증권

(2015/11/04 오후 7:22:40, 20분 지연 정보) (단위: 원, 주)

종목	현재가	등락폭	행사가격	거래량	거래대금	존속기간	
현대상선 1WR	1,575	▲ 40	5,000	247,774	386,225,350	15/10/10~19/08/10	현대상
트레이스 2WR	2,195	▲ 260	1,960	83,104	174,656,320	13/09/05~16/07/05	트레이
파루 6WR	943	▼ 34	4,445	165,931	158,024,902	15/11/23~20/09/23	파루
코오롱인더 3WR	21,550	▲ 150	51,300	6,014	124,480,700	13/11/04~18/09/04	코오롱
페이퍼코리아 2WR	597	▲ 17	601	192,962	113,376,325	13/03/07~16/01/07	페이퍼
한진해운 1WR	1,025	▲ 10	6,450	30,645	30,949,660	13/08/26~17/04/21	한진해
웅진에너지 1WR	199	▲ 14	3,960	69,081	12,888,702	12/01/19~16/11/19	웅진에
엠벤처투자 12WR	253	▲ 1	500	37,865	9,584,771	13/11/08~17/07/08	엠벤처
슬고바이오 1WR	1,955	▼ 30	500	1,278	2,549,555	13/11/17~16/09/17	슬고비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그림 2-7] 상장된 신주인수권

<표 2-9> 투자관련 내부규정 중 승인권에 대한 사항

제2장 투자전략회의 등

제4조(업무담당자 구성 및 투자전략회의 등)

- ① 유가증권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투자운용, 자금결제,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 및 담당 부서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유가증권 투자업무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서 내 투자전략회의를 둔다
- ③ 투자전략회의는 주무부서장, 투자운영, 자금결제,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사항)

- ① 투자전략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증시동향 및 전망
 2. 유가증권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 투자규모
 4. 투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한도초과 및 손절매 유보에 관한 사항

(1) 지불불능위험

기업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투자 대상이 유가증권이라 가정할 때 투자대상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이 상환 시점에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에 유가증권 발행 시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지불된 약정일자에 지불 못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지불불능상태가 된 것이다. 지불불능 위험은 바로 기업이 약정된 일자에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지불불능위험이 높은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며 지불불능이 낮은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의 경우 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지불불능 위험이 매우 적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나 기업어음 등은 국공채보다 지불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공채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위험과 수익률간의 실익을 따져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2) 시장성

기업이 투자대상을 선택할 때 투자대상의 시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성이란 투자대상을 다시 현금으로 환가했을 때 얼마나 빨리 손실 없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투자대상보다 시장성이 낮은 투자대상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된다.

(3) 상환기일(만기일)

유가증권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상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는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수익률과도 관계있다.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취득하였을 때 이 유가증권은 만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지불불능에 빠질수 있는 위험. 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것이 시장에 다른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손실일수 있는 위험.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가격 폭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긴 유가증권의 경우 만기가 짧은 유가증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② 자금운용일정표 작성한다

1. 자금운영대상 정리하기

자금운용일정표는 먼저 자금을 운영하기로 결정된 상품에 대해서 정리한다. 상품에 대한 기본 사항인 상품명, 투자금액, 투자기간, 중개금융기관 및 투자자금 송금계좌번호 등을 포함하여 정리하며 상품별로 정리 시 투자기간별로 나열하여 정리가 쉽도록 배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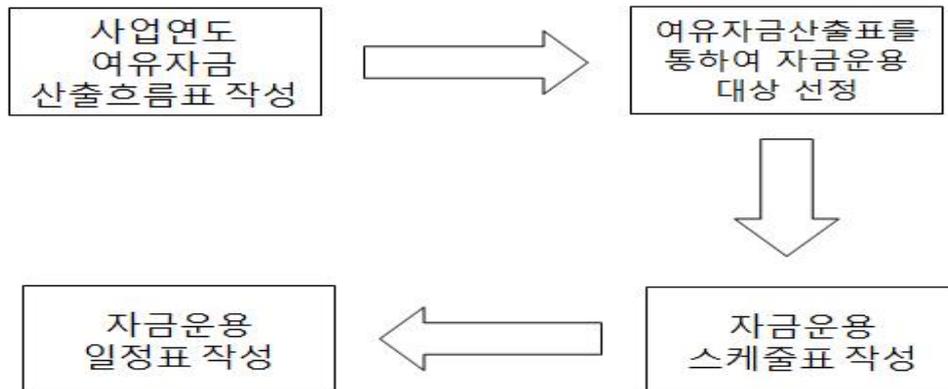
2. 자금운용스케줄표 작성하기

투자기간별 정리한 상품에 대해 스케줄표를 작성한다. 가급적 일단위로 작성을 하며 스케줄표상 자금의 조달시기와 환매시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자금운용일정표 작성하기

자금운용 스케줄표와 월별자금지불 스케줄표를 합하여 자금이 조달되는 시기 사업과 관

련한 자금지불시기, 자금운용시기 및 환매시기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림 2-8] 자금운용일정표 작성 흐름도

5. 자금운용일정표 작성방법 이해하기(예시)

<표 2-10>는 A라는 기업의 3월까지 여유자금 산출 흐름표이다. 마지막 하단 부분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각 월말에 해당하는 기간별 여유자금과 사업연도의 초과자금 규모를 볼 수 있다. 각 기간별 여유자금을 보면 1월의 경우 48억9,000백만 원이고 2월은 148억 8,000만 원 3월은 94억 2,000만 원 4월은 93억 6,000만 원이고 초과조달 자금은 5억 3,000만 원이다. 1월의 기간별 여유자금 48억 9,000만 원의 경우 2월, 3월, 4월의 기간별 여유자금이 1월의 기간별 여유자금의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4월까지의 운용 가능한 규모가 줄지 않는다. 그러나 2월의 기간별 여유자금 148억 8,000만 원의 경우 3월의 여유자금이 94억2,000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차액인 54억 6,000만 원 3월 중에 지불 예정이므로 운영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자금운용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표 2-10> 1월부터 3월 여유자금 산출 흐름표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자금조달	금융기관차입	10,000	-	10,000	-
	내부조달1	6,000	6,000	-	-
	내부조달2	6,000	-	600	-
	계	22,000	6,000	10,600	-
	(누적)		6,000	16,600	16,600
지불비용	신규사업1	5,000	1,000	500	350
	신규사업1예비비	650	-	-	-
	기존사업	700	100	100	100
	신규사업2	9,500	-	-	5,000
	신규사업2예비비	500	-	-	-
	투자사업1	5,000	-	-	-
	경비	120	10	10	10
	계	21,470	1,110	610	5,460
현금흐름	기초	-	-	4,890	14,880
	조달	22,000	6,000	10,600	-
	지불	20,320	1,110	610	5,460
	사업유보비	1,150			
	기말(기간별 여유자금)		4,890	14,880	9,420
	초과조달자금	530			

(가) 1월 여유자금 운용계획 작성하기

1월의 운용가능한 여유자금은 48억 9,000만 원이다. 이 여유자금 중 초과조달자금인 5억 3,000만 원의 경우 장기간 기간별 운용 여유자금에 비하여 장기간 운용할 수 있으므로 12개월 정기예금 상품을 통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지불비용에 보면 신규사업 1의 예비비가 6억 5,000만 원, 신규사업 2의 예비비가 5억 원이고, 기존사업과 관련한 하여 매월 지불이 발생하는 자금이 전체 7억 원, 매월 지불이 발생하는 경비의 전체 금액이 1억 2,00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예비비의 경우 기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피드백적인 금액이므로 사용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며 기존사업의 사업비와 경비의 경우 매월 지불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금액은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MMF나 MMDA, 특정금정신탁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하여 운용해야 한다. 예비비 11억 5,000만 원의 경우 MMDA를 통하여 운용하기로 하며 기존사업에 지불되어야 하는 7억 원 중 6억 9,000만 원은 MMF를 통하여 운용하기로 하며 마지막 월인 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12월 만기인 상품을 통하여 지불을 실행하기로 한다. 경비의 합계인 1억 2,000만 원의 경우 특정금정신탁을 통하여 운용하기로 한다. 나머지 여유자금인 24억 원의 경우 3월까지 조달자금과 지불자금을 감안하였을 때 자금운용 시 환매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기가 9월인 채권에 운용하기로 한다. 이로서 1월 기준으로 자금운용되는 상품은 12개월 만기인

정기예금이 5억 3,000만 원, 수시입출이 가능한 상품인 MMF, MMDA, 특정금신탄을 통한 운용이 19억 6,000만 원, 그리고 단기운용상품인 채권에 투자가 24억 원이다.

(나) 2월 여유자금 운용계획 작성하기

2월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조달로 100억 원, 그리고 내부 조달로 6억 원, 총 106억 원의 자금조달이 있을 예정이다. 반면 2월에 지불되는 비용은 6억 1,000만 원이므로 99억 9,000만 원의 운용 가능한 기간별 여유자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3월에 추가 조달되는 자금이 없는 반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54억 6,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53억 5,000만 원은 1개월 만기인 채권을 통하여 운용한 후 채권환매를 통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은 MMF, 1,000만 원은 특정금전신탄을 환매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46억 6,000만 원의 경우 상장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운용하기로 한다.

(다) 자금운용스케줄표와 자금운용 일정표 작성하기

이를 정리하여 3개월간의 자금운용스케줄표를 작성하면 <표2-11>와 같으며 자금운용스케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여유자금산출표와 취합하여 자금지불과 조달 그리고 운용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자금운용일정표를 작성한다. <표 2-12>은 자금운용스케줄표와 여유자금산출표를 취합하여 작성한 1월부터 3월까지의 자금운용일정표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1개 사업연도의 자금운용일정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표 2-13>와 같다.

<표 2-11> 1월부터 3월까지의 자금운용스케줄표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자금 운영	장기운영	정기예금	530	530	-	-	
		소계	12,390	2,400	9,990	-	
	단기상품	만기9월 채권	2,400	2,400	-	-	
		만기3월 채권	5,350	-	5,350	-	
		주식	4,540	-	4,640	-	
		소계	1,960	1,960	-	-	
	수시유보	MMDA	1,150	1,150	-	-	
		MMF	690	690	-	-	
		특정금전신탁	120	120	-	-	
	운영계		14,880	4,890	9,990	-	
	자금 운영 환매	장기운영환매		-	-	-	-
		단기상품환매	만기 3월채권	5,350	-	-	5,350
			소계	-	-	-	110
		수시유보환매	MMF	-	-	-	100
		특정금전신탁	-	-	-	10	
환매계				-	-	5,460	
운영 잔액	장기운영잔액	정기예금		530	530	530	
		소계		2,400	12,390	7,040	
	단기상품잔액	만기 9월채권		2,400	2,400	2,400	
		만기 3월채권		-	5,350	-	
		주식		-	4,640	4,640	
		소계		1,960	1,960	1,850	
	수시상품잔액	MMDA		1,140	1,140	1,140	
		MMF		700	700	600	
		특정금전신탁		120	120	110	
	운영잔액계			4,890	14,880	9,420	

<표 2-12> 1월부터 3월 자금운용일정표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자금조달	금융기관차입	10,000	-	10,000	-		
	내부조달1	6,000	6,000	-	-		
	내부조달2	6,000	-	600	-		
	계	22,000	6,000	10,600	-		
	(누적)		6,000	16,600	16,600		
지불비용	신규사업1	5,000	1,000	500	350		
	신규사업1예비비	650	-	-	-		
	기존사업	700	100	100	100		
	신규사업2	9,500	-	-	5,000		
	신규사업2예비비	500	-	-	-		
	투자사업1	5,000	-	-	-		
	경비	120	10	10	10		
계	21,470	1,110	610	5,460			
자금운용	장기운영	정기예금	530	530	-	-	
		소계	12,390	2,400	9,990	-	
		단기상품					
	단기상품	만기9월 채권	2,400	2,400	-	-	
		만기3월 채권	5,350	-	5,350	-	
		주식	4,540	-	4,640	-	
	수시유보	소계	1,960	1,960	-	-	
		MMDA	1,150	1,150	-	-	
		MMF	690	690	-	-	
		특정금전신탁	120	120	-	-	
	운영계	14,880	4,890	9,990	-		
	자금환매	장기운영환매	-	-	-	-	
		단기상품환매	만기3월채권	5,350	-	-	5,350
		수시유보환매	소계	-	-	-	110
			MMF	-	-	-	100
특정금전신탁			-	-	-	10	
환매계	-	-	-	5,460			
운영잔액	장기운영잔액	정기예금		530	530	530	
		소계		2,400	12,390	7,040	
		단기상품잔액					
	단기상품잔액	만기9월채권		2,400	2,400	2,400	
		만기3월채권		-	5,350	-	
		주식		-	4,640	4,640	
	수시상품잔액	소계		1,960	1,960	1,850	
		MMDA		1,140	1,140	1,140	
		MMF		700	700	600	
		특정금전신탁		120	120	110	
운영잔액계		4,890	14,880	9,420			
현금흐름	기초	-	-	-	-		
	조달	22,000	6,000	10,600	-		
	지불	20,320	1,110	610	5,460		
	사업유보비	1,150					
	운영	14,880	4,890	9,990	-		
	환매	13,200	-	-	5,460		
	기말		-	-	-		
	초과조달	530					

수행 tip

-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상품은 상당히 다양하다. 각 상품별 특징과 수익률을 감안하여 제일 효율적인 운용상품을 찾아야 한다.

<표 2-13> 1개 사업연도의 자금운용일정표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금조달	금융기관차입	10,000	-	10,000	-	-	-	-	-	-	-	-	-	-
	내부조달1	6,000	6,000	-	-	-	-	-	-	-	-	-	-	-
	내부조달2	6,000	-	600	-	5,400	-	-	-	-	-	-	-	-
	계	22,000	6,000	10,600	-	5,400	-	-	-	-	-	-	-	-
	(누적)		6,000	16,600	16,6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비용지불	신규사업1	5,000	1,000	5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신규사업1예비비	650	-	-	-	-	-	-	-	-	-	-	-	-
	기존사업	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신규사업2	9,500	-	-	5,000	-	1,000	-	1,000	-	1,000	-	1,000	500
	신규사업2예비비	500	-	-	-	-	-	-	-	-	-	-	-	-
	투자사업1	5,000	-	-	-	5,000	-	-	-	-	-	-	-	-
	경비	1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계	21,470	1,110	610	5,460	5,460	1,460	460	1,460	360	1,360	360	1,360	860
자금운영	장기운영	530	530	-	-	-	-	-	-	-	-	-	-	-
	단기상품	12,390	2,400	9,990	-	-	-	-	-	-	-	-	-	-
	수시유보	1,960	1,960	-	-	-	-	-	-	-	-	-	-	-
	운영계	14,880	4,890	9,990	-	-	-	-	-	-	-	-	-	-
자금회매	장기운영환매	-	-	-	-	-	-	-	-	-	-	-	-	-
	단기상품환매	12,390	-	-	5,350	-	1,350	350	1,350	350	1,350	350	1,350	590
	수시유보환매	810	-	-	110	60	110	110	110	10	10	10	10	270
	환매계	13,200	-	-	5,460	60	1,460	460	1,460	360	1,360	360	1,360	860
운영잔액	장기운영잔액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단기상품잔액		2,400	12,390	7,040	7,040	5,690	5,340	3,990	3,640	2,290	1,940	590	-
	수시상품잔액		1,960	1,960	1,850	1,790	1,680	1,570	1,460	1,450	1,440	1,430	1,420	1,150
	운영잔액계		4,890	14,880	9,420	9,360	7,900	7,440	5,980	5,620	4,260	3,900	2,540	1,680
현금흐름	기초	-	-	-	-	-	-	-	-	-	-	-	-	-
	조달	22,000	6,000	10,600	-	5,400	-	-	-	-	-	-	-	-
	지불	20,320	1,110	610	5,460	5,460	1,460	460	1,460	360	1,360	360	1,360	860
	사업유보비	1,150												
	운영	14,880	4,890	9,990	-	-	-	-	-	-	-	-	-	-
	환매	13,200	-	-	5,460	60	1,460	460	1,460	360	1,360	360	1,360	860
	기말		-	-	-	-	-	-	-	-	-	-	-	-
	초과조달	530												

학습 2 교수·학습 방법

교수 방법

- 학습자들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정과 기업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정된 규정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한다.
- 초과여유자금과 기간별 여유자금의 투자 대상이 왜 장기보다는 단기 그리고 환가성이 높은 투자 대상에 집중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 증권, 채권, 파생상품시장과 그 외 금융상품 상품에 대한 특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자금운영일정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본다.

학습 방법

- 법에 의한 강행규정과 기업의 내부규정의 차이와 제정이유를 이해하여 본다.
- 여유자금 투자대상이 기간이 짧고 환가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집중되는지를 생각하여 본다.
- 증권, 채권, 파생상품시장과 그 외 금융상품 상품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여 본다.
- 자금운영일정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자금운영 일정표를 작성하여 본다

학습 2 평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학습목표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자금운용기준 수립하기	- 파악된 여유자금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용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자금운용계획수립하기	- 수립된 여유자금 운용기준에 따라 장단기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수립된 장단기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자금운영일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객관식 평가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자금운용기준 수립하기	- 강행규정 및 내부규정에 맞춰 투자 대상별 한도 금액 산출			

- 자금운용 일정표 작성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자금운용계획 수립하기	- 투자 대상별 한도에 맞춰 장단기 자금운영계획 수립			
	-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운영일정표 작성			

피드백

1. 객관식 평가

- 강행규정과 기업내부 규정을 제시하고 그 규정에 맞춰 올바르게 표시된 투자 종목 및 투자금액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강행규정과 기업내부 규정에 맞춰 투자금액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기업내부 규정만 맞춰 투자금액을 산출하도록 한다.

2. 자금운용일정표 작성

- 사업연도 여유자금 산출 흐름표를 제시하고 사업연도 여유자금 산출 흐름표에 근거하여 자금운용일정표를 작성하되 그 일정표 상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 자금운용일정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월별 일정표 작성이나 전체 일정표 중 일부분만 작성도록 하여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전체의 자금운용일정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학습 1	가용자금 파악하기(0203010204_14v2.1)
학습 2	자금운용방안 수립하기(0203010204_14v2.2)
학습 3	자금지불하기(LM0203010204_14v2.3)

3-1. 자금지불의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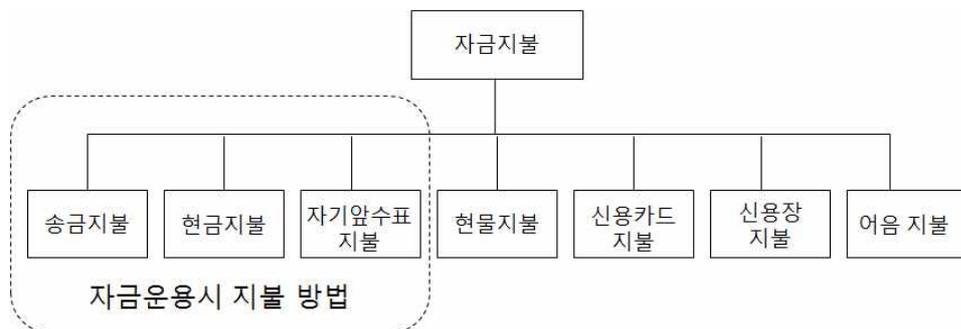
학습 목표

- 자금운용일정표에 따라 지불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결정된 지불 방법에 따라 자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① 지불 방법

기업이 자금을 지불 방법으로는 송금, 현금지불, 어음, 신용카드, 신용장 개설을 통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불 방법은 자금을 지불하는 목적, 시기, 자금을 지불 받는 상대의 지형학적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용자금을 운용과 관련된 지불의 경우 이미 확보된 자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송금 및 현금, 자기앞수표를 통한 지불의 방식을 많이 사용된다.



[그림 3-1] 자금지불방법의 분류

1. 송금을 통한 지불

송금을 통한 지불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을 상대방의 계좌이체하여 주는 것을 말

한다. 송금을 통한 지불 방법에는 금융기관을 내방하여 창구에서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 있다.

2. 현금 지불

현금을 통한 지불은 당사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법이다. 송금을 통한 지불 방법보다는 자주 쓰는 방식은 아니나 당사자 간의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지불에 대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 자기앞수표를 통한 지불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표의 소지인에게 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위탁하는 금전지불위탁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수표를 말한다. 수표법상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한정되므로, 결국 자기앞수표란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이 있으며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간이며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이에 이은 제1거래일까지 연장된다. 수표에 대하여 단기의 지급제시기간을 둔 것은 어음과는 달리 수표는 신용증권이 아니라 지급증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수표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여 발행금융기관에 대해 수표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불이 유효하므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융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좌수표의 경우에도 발행인의 지불위탁취소가 없는 이상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수표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지급인과 발행인을 겸하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지급위탁취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비록 소구권은 소멸하였더라도 그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어차피 발행은행은 그 이득금을 소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 있게 때문이다.

② 지불 방법에 따른 자금의 지불

자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자금지불목적, 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무자가 지출결의 품의를 올리고 그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자금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국내 거래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현금을 통한 지불의 방법은 도난 분실의 위험이 있어 선호되지 않는다. 그에 반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의 방법의 경우 안정성으로 인하여 거래를 지불하는 데 있어 선호되고 있는 반면에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을 하거나 이를 면제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일정의 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는 각각의 경우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수행 내용 / 자금지불 실행하기

재료 · 자료

- 자금운용 매뉴얼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계산기, 문서 제작 도구
- 회계 프로그램, 자금운용 프로그램

안전 · 유의 사항

- 실제 자금지불은 실무에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고 위험이 있는 업무이다. 그러므로 담당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행 순서

① 지불 방법을 결정한다.

자금을 운용하기로 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지불 방법이 결정될 수 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자금지불은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선호되며 해외주식의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같은 경우는 해외 송금의 방식, 부동산이나 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의 경우 계약서상에 언급되어 있는 송금을 통한 지불이나 현금의 직접 지불의 방식 등이 선호 된다.

1. 송금을 통한 지불 결정하기

송금을 통한 방법은 가용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실에 의한 사고 위험이 적으므로 거액의 자금을 지불할 때 많이 사용된다.

송금을 통한 지불 방법에는 금융기관을 내방하여 창구에서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 있다.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반드시 송금을 의뢰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금액의 제한이 없고 해외 송금도 가능하나 이체 수수료가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방법보다 높고 대표이사 아닌 직원이 방문 시 위임장 작성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수수료가 창구를 통한 송금보다 낮으나, 반드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일일 이체한도 및 1회 이체한도 등의 송금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현금 통한 지불 결정하기

현금 지불의 경우 국내 통화로 지불하는 방법과 해외 통화로 지불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 통화로 지불하는 국내 통화인 원화로 상대방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법이다. 해외 통화로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국가의 통화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해외 통화로 지불 시 환전을 통해 해외 실물 통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통화를 통한 지불의 경우 각각 발행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3. 자기앞수표를 통한 지불 결정하기

자기앞 수표는 현금에 비하여 보관, 휴대 및 계산상 편리하고 안전하므로 자기앞수표가 현금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자기앞수표를 통하여 지불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야 한다. 자기앞 수표의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발행대금을 수납하게 되는데 즉시 현금화한 자금(현금, 예금)만이 수납대상이 된다. 자기앞수표의 종류는 정액자기앞수표(정액권)와 일반자기앞수표(일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액권의 경우 10만 원권, 50만 원권, 100만 원권이 있으며, 일반권은 500만 원권, 1,000만 원권, 5,000만 원권이 있다. 수표가 발행할 수 있는 금액권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발행인인 금융기관이 수표 발행 시 수표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지출결의서의 작성하기

지출결의서는 실제 자금을 지불하기 전 자금지불 방법에 대한 실행을 책임자에게 확인받고 결재하는 행위이다. 기수립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가용자금을 운용하기로 한 운용대상에 해당하는 지불 방법에 맞추어 실무자는 지불의 일시, 지불의 목적, 지불의 방법 등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의 결제를 득한 후 지불을 실행하게 된다.

지출결의서

(2015. 8. 28.)

자금 원	담 당	대 리	팀 장	임원	임원	대표이사
사업종의서 (지급원인)		국내 주식대상 펀드 상품 투자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액 : 일십억 원 (₩1,000,000,000)						
(내 역)						
1. 지급목적 : 국내주식대상 펀드 상품 투자에 대한 자금 지급						
2. 자금지급 방법 : 00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 방식						
3. 송금계좌 : 계좌번호 00은행 123-456-789						
4. 예금주 : 00 투자증권						
5. 지급일시 : 2015. 8. 29.						
지급실행 결과			책임자	지 급 상 대 처	상 호	00투자증권
지급일	2015. 8. 29.		담 당		사 업 자 (주 민)	XXX-XX-XXXXX
지급금액	1,000,000,000원				등 록 번 호	
영수증	후면 첨부		성 명		대표이사 000	

[그림 3-2] 지출결의서

[그림 3-2]은 국내주식대상 펀드상품 투자상품에 자금지불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이다.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지불목적, 자금지불 방법, 송금계좌 예금주와 지불일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결제 라인까지 결제를 득하고 자금지불을 실행한 후 지불 실행 확인을 책임자에게 받아야 한다.(지불 하단 지불실행 결과)

② 결정된 지불 방법에 따라 자금을 지불할 수 있다.

1. 송금을 통하여 지불하기

송금을 통한 지불의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송금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송금 방법이 있다. 또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송금의 방법은 국내 송금 방식과 해외 송금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창구를 통하여 송금하기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송금 방법은 송금의뢰인이 송금을 의뢰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창구를 내방하여 의뢰하는 방법이다. 송금을 의뢰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고객거래확인서를 작성 후 송금 의뢰를 해야 하며,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창구에서 출금과 송금을 의뢰한다.

고객거래확인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위 두 가지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법인을 대리하여 출금과 송금을 하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는 증빙의 서류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내방한 직원의 신분증을 창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가 내방한다고 하면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가) 국내 송금하기

송금의뢰 시 송금받을 대상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하며 송금의뢰인에 대한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한다.

기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할 경우 계좌 통장에 날인되어 있는 거래인감과 출금 및 송금에 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대표이사의 경우 제외) 송금 시 다른 금융기관에 송금할 경우 은행에서 명시한 송금 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융기관의 고객등급에 따라 면제되기도 한다.

(나) 해외 송금하기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송금 방법은 송금의뢰인이 창구에 내방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뱅킹을 통한 방법이 있다. 창구에서 내방하여 신청할 경우 금액이 거액일 경우 송금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은 국내 통화로 해외 통화를 구입하여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환전 수수료와 해외 송금 중간거래은행 수수료 그리고 현지에서 금전을 찾는 것에 대한 수수료 세 번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해외 송금 시 해외 계좌에 은행명, 해당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송금 대상 은행의 SWIFT코드 등을 알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해외송금신청서를 기재한 후 송금 의뢰를 한다.

고객거래확인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의거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국적		여권번호				
주소	개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전화번호 :		
	영리법인	본점				휴대폰:		
	비영리법인 /기타단체	사업장				이메일 :		
영리법인(업종) 비영리/기타단체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최대주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거래목적(용도)		입출금거래				실제 당사자여부		
		계좌신규						

○ 대리인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국적		여권번호			
주소	개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전화번호 :	
	영리법인	본점				휴대폰 :	
	비영리법인 /기타단체	사업장				이메일 :	
영리법인(업종) 비영리/기타단체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대리인에 의한 금융 거래 시에는 본인(명의인)과 대리인의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원작성란)

거래종류		관련계좌번호 (Ref Number)	
------	--	------------------------	--

[그림 3-3] 고객거래 확인서

[그림 3-3]는 실제 금융기관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송금을 보낼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이다. 위 그림에서 보면 송금 시 송금인의 인적사항과 송금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다.

2. 현금 지불하기

현금을 지불을 하는 경우는 국내의 경우 현금, 수표를 통한 지불 방법이 있고 해외의 경우 해외통화를 통한 지불 방법이 있다.

(1) 통화를 통하여 지불하기

(가) 국내 통화를 통하여 지불하기

현금을 통한 지불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시재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대금 결제에 있어 가장 크게 선호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지불금액을 현금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분실 시 회수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

(나) 해외 통화를 통하여 지불하기

해외 통화를 통한 지불의 경우 해외 통화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국내 통화를 해외 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때 환전과 관련한 수수료가 발생하며 미국,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나 유명한 통화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쉽게 환전 가능하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국가의 통화의 경우 환전 가능한 곳이 한정되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환전 가능한 곳은 금융기관이나 사설 환전소에서 가능하며 거액의 경우 금융기관을 선호한다. 환율 및 환전 수수료는 각 환전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유리한 곳을 찾아 환전하는 것이 이익이다.

3. 자기앞수표를 통하여 지불하기

자기앞수표를 통하여 지불할 경우 지불받은 수령인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지불제시할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지만 발행금융기관이 아닌 타 금융기관에 지불제시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정보교환망을 통하여 발행금융기관으로 지불제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불제시일로부터 1일 경과 후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분실 시 해당 금융기관에 사고신고를 접수할 경우 수표를 습득한 타인에게 현금 지불이 정지되며 공시 최고 및 제권판결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수표 요건

수표는 다음과 같은 수표 요건을 갖추어 발행되어야 한다.

(가) 수표문헌

수표에는 자기앞수표라는 문언이 인쇄되어야 한다.

(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뜻의 무조건 위탁

수표 상에 ‘위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불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지급인의 명칭

자기앞수표의 특징은 발행은행이 지급인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므로, 현행 자기앞수표 양식은 OO은행(OO지점)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지급지

현행 자기앞수표 용지에는 수표문언 아래에 지급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OO은행 OO 지점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발행일

수표의 발행일은 지불제시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면 흠결의 수표이거나 백지식 수표로 보게 된다.

(바) 발행지

수표법상 발행지 기재는 수표의 요건이다. 그러나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수표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사)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발행은행과 영업점을 기재하고, 발행행위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4] 수표의 기재사항

3-2. 자금지불 후 사후관리

학습 목표

- 지불된 자금을 대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불 결과 확인 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① 지불된 자금의 결과 확인

자금지불 시 발생하는 실수는 지불 금액에 대한 오류, 지불 대상자에 대한 착오로 인한 오류, 금융기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실무 담당자는 자금을 지불하기 전 선결자로부터 반드시 그 지불 방법 및 지불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자금지불 이후 반드시 자금지불 결과를 증빙하는 확인서(송금의 경우 송금 영수증, 현금 지불의 경우 자금 수납에 대한 영수증, 카드 지불의 경우 카드 청구서)를 징구해야 하며 송금 전과 송금 완료 후 반드시 여러 번의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실제 송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당황치 말고 그에 대한 후속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지불 결과 확인 후 문제 해결

1. 송금을 통한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송금을 통한 자금지불은 금융기관을 중개인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만약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거나 지불 대상자에 대한 착오로 잘못 송금하였을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송금을 받은 상대방이 금액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와 인출하였을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송금을 의뢰한 금융기관의 전산을 통하여 송금을 취소하고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미 상대방이 계좌에서 지불받은 금액을 인출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전산을 통한 취소가 어렵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만약 상대방이 이에 대해 불응할 시 부당이득반환의 소송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하여 반환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2010. 11. 11. 대법원판결 2010다41263, 4270)에 따르면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2. 현금지불을 통한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자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발생될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지불금액의 오류로 인한 문제과 둘째는 자금지불시 현금에 대한 분실이다. 첫째인 지불금액의 오류는 지불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불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불완료 후 지불금액이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초과 지불 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금지불을 한 후 상대방에게 징수한 자금수납에 대한 영수증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초과로 자금을 지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요청에 불응하였을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법적 수단을 이용한 강제 회수 방법이 있다. 둘째 분실의 경우 신문에 분실 공고를 내거나 경찰서에 분실 신고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가 많이 사용된다.

3. 자기앞수표 지불을 통한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현금지불과 마찬가지로 자기앞 수표로 지불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지불금액의 오류로 인한 문제와 지불 시 수표의 분실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지불을 정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은 단순히 지불을 정지하는 것이며 사고신고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다.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통하여서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시최고란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없을 경우 권리를 실권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의 대상인 사항에 관하여 실권선고를 하는 판결이다.

(1) 사고신고별 수표금 지불의 형태

(가) 제시기간 내에 사고신고와 지불제시가 있는 경우

지불제시기간 내에는 자기앞수표의 양도인이 비록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양수인이 분실 또는 도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모르는데 대하여 중과실이 없는 이상, 양수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게 된다.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지불제시기간 내에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은행이 그 지불제시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고신고를 이유로 그 지불을 거절할 수는 없다. 또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는 지불위탁취소

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기간 내에 지불을 청구하는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

(나) 제시기간 내에 사고 신고가 되었으나 제시기간 경과 후 지불 제시된 경우

위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지인이 지불제시기간 내에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선의취득할 가능성도 있으며 선의취득하였다면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이다. 또 지불제시인이 지불제시기간 경과 후에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정당한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일 수 있다. 그러나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관계와 권리취득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은행으로는 지불거절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소송의 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다) 지불제시기간 경과 후 사고신고와 지불제시가 된 경우

지불제시기간 경과 후에 사고신고가 된 경우라면 지불제시인은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은행은 지불을 거절하게 되고 당사자의 합의 또는 소송의 결과에 따르게 된다.

수행 내용 / 자금지불후 사후관리 하기

재료·자료

- 지출 품의서, 지출결의서, 자금운용 매뉴얼

기기(장비·공구)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계산기, 문서 제작 도구
- 회계 프로그램, 자금운용 프로그램

안전·유의 사항

- 지불을 실행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불 실행한 이후 바로 그 결과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행 순서

① 지불된 자금을 대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송금에 대한 확인하기

(1) 창구 송금에 대한 확인하기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송금 실행 시 송금 담당 텔러가 직접 송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송금에 대한 전산상에 나타난 계좌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송금을 한다. 송금이 완료되면 송금일자, 송금인, 송금액, 수신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금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니 그것을 통해 정확하게 송금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전자금융거래 송금에 대한 확인하기

전자금융거래를 통하여 송금할 경우 본인이 직접 하는 만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송금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송금 실행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자금 이체 결과서를 출력하여 보유할 수도 있다.

2. 현금 지불의 확인하기

현금 지불의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지불을 행하는 데 있어 별도의 절차가 없다. 단지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서로 약정한 금액이 맞는지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불을 완료하였을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지불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영수증의 경우 수령한 금액, 수령날짜, 수령인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령인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을 추가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② 지불 결과 확인 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1. 송금 시 발생한 문제점 해결하기

창구에서 송금 시 금액이나 송금의뢰처가 잘못된 경우 창구에서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신고하고 송금의뢰에 대한 반환의뢰서를 작성한다. 반환의뢰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고 접수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반환요청을 하게 되며 금융결제원은 송금대상인 금융기관에 송금반환 요청서를 발송하게 되고 수락되면 송금이 반환되게 된다. 그러나 잘못된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출금하였을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앞서 필요지식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잘못된 송금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 대하여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 어떤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며, 수취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수취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반환요청하는 방법은 먼저 유선 등이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서신의 방법으로 요청한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반환을 거절할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 하여 법적 조치를 통한 방법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한 서신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증빙의 자료로 사용된다. 소송을 통한 법적조치의 방법의 경우 소송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과 또 판결과 회수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송금 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타행환 착오입금 반환(취소) 신청서

확인		
담당	책임자	부/점장

본인이 귀행에 의뢰하였던 타행환 송금 건이 아래에 기재된 사유로 오류 송금되었기에 반환(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취소)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귀행에 대하여는 일체의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일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거래일자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송금의뢰번호	
반환요청액	
오류입금액	
정당입금액	

■ 신청사유

1. 고객계좌기재오류	2. 직원계좌입력오류	3. 금액입력오류	4. 기타 ()
-------------	-------------	-----------	-----------

■ 상대금융기관 담당자

금융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사항	

[그림 3-5] 송금반환 신청서

2. 현금 지불 시 발생한 문제점 해결하기

(1) 지불금액 오류로 인한 문제 해결하기

자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

을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과의 지불을 하기로 한 원인 계약서와 상대방에게 지불 후 발급받은 영수증과의 금액이 상이함을 근거로 요청한다. 그러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초과 지불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하는 방법은 먼저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서신의 방법으로 요청한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반환을 거절할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 하여 법적 조치를 통한 방법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이때 지불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와 상대방이 발급한 영수증, 내용증명을 통한 서신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증빙의 자료로 사용된다.

(2) 현금 분실

현금을 분실하였을 경우 현금 분실에 대한 신고를 경찰서에 하고 분실 신고서 작성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한다. 분실 신청의 경우 경찰서에 직접 내방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상 경찰청 유실물 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분실신고 방법은 부록에서 추가로 설명하기로 한다.

3. 자기앞수표 지불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기

자기앞수표 지불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 사고 신고를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사고신고 보증금을 수납하게 된다. 그 후 경찰서 분실 도난 신고 또는 신문 분실 공고 후 법적절차 수속(공시최고, 제권판결)을 진행하며 제권판결이 난후 제권판결 정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제권판결 1개월 후 금융기관에서 자기앞수표 해당 금원을 반납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신고서 제출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미통보 시 금융기관에서는 수표의 최종 소지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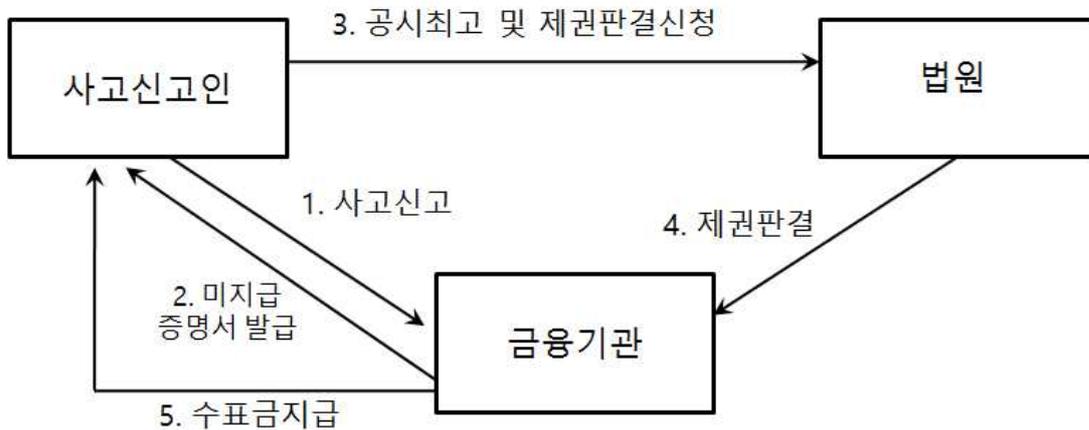
(1) 사고 신고 보증금 예치이유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은행이 사고 신고를 접수해 줄 법적 의무가 없다. 은행은 대가를 받고 수표를 매각한 자이기 때문에, 수표의 소지인에게는 무조건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불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은행이 사고신고를 이유로 자기앞수표를 부도처리하게 되면, 그 소지인은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할 터인데, 은행은 그 소송을 수행할 의무도 없으려니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과 지연배상금 등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은행은 자기앞수표에 관한 사고 신고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보증인을 세움과 동시에 그 신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손실부담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예치 받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수표의 사고 신고에 따른 흐름

(가) 해당 은행에 사고 신고 접수 및 미지불증명서 발급 요청

- (나) 신문에 분실 공고 또는 경찰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 (다) 수표 지불지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관할 법원은 각 지역별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법원의 관할 지역이 표시되어 있다.)
- (라)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시최고 신청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
- (마) 공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에 제권판결 신청
- (바) 제권판결문 정보를 은행에 제시 후 청구(1개월 후 지불)



[그림 3-6] 자기앞수표 사고신고 흐름도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은 먼저 전화를 통하여 사고 신고를 한 후 은행 내 접하여 [그림 3-7]에서 보이는 사고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사고 신고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수표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사고 신고 시 사고신고 금액의 10~40% 수준의 사고신고 보증금을 수납한다.

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법적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령한 금융기관은 이후 지불제시된 사고수표에 대해서 사고신고서 접수로 인한 지불거절로 부도반환하게 된다. 이때 사고신고를 접수한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고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자기앞수표 사고신고(취하)서

대상수표	수표번호	발행일	
	수표금액	발행인	(취급기관 : 은행 지점)
사고내용	<input type="checkbox"/> 도난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사전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수표가 지급제시되는 경우 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회에서 본인의 사전신고서를 접수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접수 전에 이미 다른 영업점에서 지급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또는 동 신고서 접수 이후에도 금융기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기앞수표 대지급제도에 의거 다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귀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사전신고 및 공시최고 절차 등을 취하겠습니다.
2. 사고신고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경우 사고신고서 제출후 5영업일 이내에 공시최고나 기타 법적저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귀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소지인에게 동 대금을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소지인의 지급경구 소송 등으로 인하여 귀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 지연이자, 기타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으며 그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본건 해결시까지 금 원정의 보증금을 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만일 비용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즉시 납입하겠습니다.
4. 본인의 사고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귀 회와 제3자간에 발생하는 소송, 기타 모든 분쟁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의 사고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귀회가 피소되어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조참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고지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에 참가 할 것이며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의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
 생년월일
 성명 (인/서명)

연대보증인 주소 (전화번호 :)
 생년월일
 성명 (인/서명)

출처: 상호저축은행 자기앞수표 사고신고서
 [그림 3-7] 자기앞수표 사고신고서

(3) 공시최고 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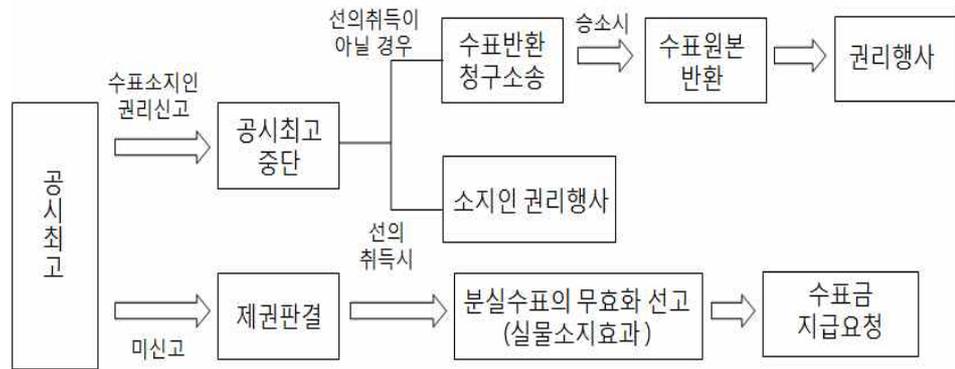
(가) 공시최고의 의미

공시최고절차란 누가 권리자인지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는 일정기간 안에 권리신고를 할 것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실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발하고 그 결과 아무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권리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다. 공시최고의 신청자는 분실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다. 수표의 공시최고의 경우 수표의 지불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지불지의 기재가 없을 경우 발행인의 보

통 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서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당시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공시최고 절차에 관한 위 규정은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공시최고 시 구비서류

- 1) 공시최고 신청서
- 2) 수표 사본
- 3)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4) 지불은행이 증명한 미지불증명서
- 5) 발행인이 증명한 발행사실 증명서(수표 사본이 없을 시)
- 6) 일간지 분실공고 사본(발행사실증명서 또는 사본이 없는 경우)
- 7)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림 3-8]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흐름도

(3) 제권판결신청하기

(가) 제권판결의 정의

제권판결은 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리는 판결이라는 의미로서 수표가 표창하고 자 하는 권리 금전의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수표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서 발생하게 된다. 제권판결은 이러한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판결로서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고 제권판결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제권판결의 효력

1) 권리추정력의 상실

수표의 소지자는 수표의 형식적 하자가 없는 이상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받고, 그 결과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이를 권리의 추정력이라 하는데 제권판결 후에는 이러한 권리의 추정력이 없어진다.

2) 선의취득의 부인

제권판결 후에 누군가가 그 수표를 선의 취득하더라도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고 제권판결 전에 수표의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기일이나 제권판결 전에 담당 법원의 재판부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권판결 자체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의 받지 않는 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3) 면책력의 실효

수표채무자나 지불인이 어음소지자에게 수표금을 지불할 경우 설령 그 소지인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 하여도 형식상 무권리자(필요적 기재사항 누락)가 아닌 이상 채무자나 지불인이 선의이면 면책이 되고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지불 청구하여도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되는데 이를 면책력이라 한다. 제권판결이 있게 되면 이와 같은 면책력이 없어진다.

4) 수표의 원본 없이 권리행사

수표는 상환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지불받기 위해서는 수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권판결이 있게 되면 이러한 원본 없이도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 제권판결 불복의 사유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고 법에서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제권판결을 취소시키기 위한 불복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90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다.

-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 8)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9)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10)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11)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12)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수행 tip

- 가용자금지불의 방법은 개인의 지불 방법과 유사하다.
- 수표의 요건이 누락될 경우 수표가 지불 수단으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수표 발급시 각 요건을 체크하여야 한다.
- 법률적인 개념(제권판결, 부당이득반환의소)의 경우 그 의미만 숙지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습 3 교수·학습 방법

교수 방법

- 학습자들이 지불 방법의 개념과 필요 지식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자금지불 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문제점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한다.
- 현금이나 수표 지불 시 상대방에게 받을 영수증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 수표 발행의 방법과 수표 분실 사고 신고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다.

학습 방법

- 지불 방법의 개념과 필요지식에 대해서 이해하여 본다.
- 자금지불 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이해하고 각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본다.
- 현금 지불시 상대방에게 받을 영수증 작성에 대한 서식을 이해하고 직접 작성하여 본다.
- 수표 발행 방법과 수표분실 사고 신고의 과정에 대해 숙지하여 본다.

학습 3 평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학습목표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자금지불의 실행	- 자금운용일정표에 따라 지불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결정된 지불 방법에 따라 자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자금지불 후 사후관리	- 지불된 자금을 대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불 결과 확인 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지출결의서 작성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자금지불 후 사후관리	자금운용일정표에 따라 지불 방법을 결정			
	결정된 지불 방법에 따라 자금을 지불			

- 서술식 평가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자금지불 후 사후관리	지불된 자금을 대하여 결과를 확인			
	지불 결과 확인 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			

피드백

1.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지출결의서상에 들어가야 할 항목(지불목적, 지불방법, 지불 일시등)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 체크한다.
-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지불방법으로 지불 실행 시 필요한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 예 : 금융기관창구 송금의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신분증, 통장, 통장거래인감
- 지출결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샘플 서식을 사례로 제시한다.

2. 서술식 평가

- 지불방법별로 지불 실행 시 지불확인을 할수 있는 서류(송금확인서, 영수증등)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수표분실 시 수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과 송금을 잘못 보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절차를 서술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면 절차 서술을 생략하고 그러한 것을 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서술하게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편)(2013). 『금융투자분석사 2』. 한국금융투자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기앞수표 업무 Manual
- 황동용(2011). 『여신실무법률 II 관리편』.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 손원준·한만용. 『경리자금에서 정부지원까지 자금실무의 모든 것』. KGB지식만들기.
- 윤정문(2015). 『한권으로 끝내는 기업자금의 조달과 관리』. 새로운제안.
- 허화·박종해(2010). 『자본시장론』. 탐북스.
- 정한규(1998). 『재무관리원론』. 도서출판 경문사.



작업 포트폴리오

<서식 1> 여유자금 산출 내역표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자금조달	금융기관차입					
	내부조달1					
	내부조달2					
	계					
	(누적)					
지불비용	신규사업1					
	신규사업1예비비					
	기존사업					
	신규사업2					
	신규사업2예비비					
	투자사업1					
	경비					
	계					
현금흐름	기초					
	조달					
	지불					
	사업유보비					
	기말(기간별 여유자금)					
	초과조달자금					

<서식 3> 자금운용 스케줄표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자 금 운 영	자금 운영	장기운영	정기예금			
		단기상품	소계			
			만기9월 채권			
			만기3월 채권			
			주식			
		수시유보	소계			
			MMDA			
			MMF			
			특정금전신탁			
		운영계				
	자금 환매	장기운영환매				
		단기상품환매	만기3월채권			
		수시유보환매	소계			
			MMF			
			특정금전신탁			
		환매계				
	운영 잔액	장기운영잔액	정기예금			
		단기상품잔액	소계			
			만기 월채권			
			만기 월채권			
주식						
수시상품잔액		소계				
		MMDA				
		MMF				
		특정금전신탁				
운영잔액계						

<서식 4> 자금운용일정표

구분		합계	1월	2월	~	11월	12월
자금조달	금융기관차입						
	내부조달1						
	내부조달2						
	계 (누적)						
비용지불	신규사업1						
	신규사업1예비비						
	기존사업						
	신규사업2						
	신규사업2예비비						
	투자사업1						
	경비						
계							
자금 운 영	자금 운영	장기운영					
		단기상품					
		수시유보					
		운영계					
	자금 환매	장기운영환매					
		단기상품환매					
		수시유보환매					
		환매계					
	운영 잔액	장기운영잔액					
		단기상품잔액					
		수시상품잔액					
		운영잔액계					
현금흐름	기초						
	조달						
	지불						
	사업유보비						
	운영						
	환매						
	기말						
	초과조달						

자금 신청서

201

수 신 :

발 신 :

()의 신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을 집행예정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금 집행 예정 내역

구 분	내 역			
신청금액	금	억(\)	
신청사유				
신청근거				
집행내역	일자	집행금액	집행사유	비고
참고자료	1. 2. 2. 3.			

영 수 증

수령금액 : 금20,000,000원정

주식회사 0000은 당사가 보유한 XXXX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200주에 대한 매매 잔금으로 위 수령금액을 지불 받았
음.

20XX년 XX월 XX일

수령인 :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XXX (인)

지출결의서

(. . .)

~) 팀	담당	대리	팀장	임원	임원	대표이사
사업품의서 (지불원인)						
다음과 같이 지불하고자 합니다.						
금액 :				원정 (W)		
(내역)						
지불실행 결과		책임자	지급 상대 처	상 호		
지불일				사업자 (주민)		
지불금액		담당		등록번호		
영수증				성 명		

<서식 8> 기안서

기안용지

문서번호							
시행일자		담 당	대 리	팀 장	임 원	임 원	대표이사
기안일자							
보존년한							
기안부서 및기안자							
제 목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시행하는 아래 용도에 관하여 위 인감을
사용하고자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용도 :

201 년 월 일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식회사 000000

대표이사 000 (인)

귀중

자기앞수표 사고신고(취하)서

대상수표	수표번호		발행일	
	수표금액		발행인	(취급기관 : 은행 지점)
사고내용	<input type="checkbox"/> 도난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사전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수표가 지불제시되는 경우 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회에서 본인의 사전신고서를 접수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접수 전에 이미 다른 영업점에서 지불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또는 동 신고서 접수 이후에도 금융기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기앞수표 대지불제도에 의거 다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지불되는 경우에는 귀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사전신고 및 공시최고 절차 등을 취하하겠습니다.
2. 사고신고수표가 지불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경우 사고신고서 제출후 5영업일 이내에 공시최고나 기타 법적처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귀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소지인에게 동 대금을 지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소지인의 지불청구 소송 등으로 인하여 귀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 지연이자, 기타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으며 그 비용의 지불을 위하여 본건 해결시까지 금원정의 보증금을 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만일 비용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즉시 납입하겠습니다.
4. 본인의 사고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귀 회와 제3자간에 발생하는 소송, 기타 모든 분쟁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의 사고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귀회가 피소되어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조참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고지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에 참가 할 것이며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의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성 명 (인/서명)

연 대 보 증 인 주 소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성 명 (인/서명)

고객거래확인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의거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국적		여권번호		
주소	개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전화번호 :
	영리법인	본점				휴대폰:
	비영리법인 /기타단체	주된 사무소				이메일 :
영리법인(업종) 비영리/기타단체 (설립목적)					최대주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거래목적(용도)		입출금거래			실제 당사자여부	
		계좌신규				

○ 대리인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국적		여권번호		
주소	개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전화번호 :
	영리법인	본점				휴대폰 :
	비영리법인 /기타단체	주된 사무소				이메일 :
영리법인(업종) 비영리/기타단체 (설립목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대리인에 의한 금융 거래 시에는 본인(명의인)과 대리인의 정보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직원작성란)

거래종류	관련계좌번호 (Ref Number)
------	------------------------

공시최고신청

신청인 : (전화번호 :)

주 소 :

증서의 중요한 취지

종류	번호	금액	발행일자	발행인	지불장소	최종소지인

신청의 취지

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함

신청의 이유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증서의 최후소지인으로서 20 . . . : 경

에서 분실하여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분실공고 1통
2. 분실신고 접수증 1통

20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① 자금운용계획 수립 보충사항

1. 증권

본문에서 단기운용투자 대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식과 채권을 언급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록에서는 본문에 첨부하여 주식(증권)의 종류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 증권의 종류

(가) 보통주

보통주는 발행기업의 입자에서는 안정적인 자기자본 조달의 수단이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지분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소유증서로서 회사의 권리와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증권전환청구권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액면증권과 무액면증권

액면증권은 주권 상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이며, 무액면증권은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증권 수만 표시되어 있는 증권이다.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하여 보통주는 회사의 자기자본 전체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의 액면가액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보통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주는 보통주의 시장가격이다.

2) 기명주와 무기명주

기명주는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명시된 증권이고, 무기명주는 표시되지 않은 증권이다. 기명주는 현주주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나 거래 시마다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나) 우선주

우선주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와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데 있어서 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 순위가 낮으나 보통주 주주보다는 우선한다.

우선주는 고정적 배당률을 확정해 놓지만 무배당도 가능하며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투자대상으로서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고, 추가적인 이익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의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무배당 가능성과 추가이익참여의 제

한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통주보다 열위에 있다. 그러나 우선주는 다양한 발행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투자대상으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발행조건별로 투자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 등으로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기에 지불하지 못한 배당을 다음 기에 누적하여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 하고 이와 반대로 배당은 해당 기에 완료되고 다음기로 누적되지 않는 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2) 참가적 우선주와 비 참가적 우선주

일정한 예정배당액만 지불받고, 예정배당액 이외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기업의 이익상태가 양호하여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액이상의 배당을 지불할 경우 그 초과배당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3) 의결권부 우선주와 무의결권부 우선주

의결권 부여에 따라서 의결권부 우선주와 무의결권부 우선주로 구분된다.

4) 전환우선주와 비전환우선주

일정시기에 일정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부 우선주를 전환우선주라 한다.

(2)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증권이 발행 매출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이 매매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 발행시장

증권의 발행시장은 발행주체인 기업이나 정부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새로이 모집하고 매출하는 시장이다. 이미 발행된 증권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대주주나 정부가 일반투자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발행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의 발행방법은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발행된 증권의 수요자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모발행과 비공모(사모)발행으로 구분된다.

1)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직접발행은 발행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직접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예정액이 전액 소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 계획의 차질이라는 위험을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접발행은 증권의 발행위험이나 발행 사무를 계약에 의해 제3의 인수기관이 맡는 방법이다. 인수업자는 인수기능을 통하여 발행자의 증권발행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증권의 발행 시기, 발행 규모, 증권의 종류 및 발행조건에 대한 조언을 한다.

2) 공개모집(공모)과 비공개모집(사모)

사모는 발행주체가 특정 기관투자자나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발행된 증권을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증권회사가 새로 설립될 때 사모의 방법이 이용된다. 사모의 방법은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발행비용이 적게 되는 이점이 있다. 사모는 발행자 스스로가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실무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직접발행의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공모는 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분산 취득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발행회사는 발행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발행기관에게 위임하게 된다.

증권 발행에 있어 위험을 분산하고 발행증권의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여러 발행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증권의 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발행기관은 주관회사, 인수단, 청약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리하고 있다.

주관회사는 증권의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원활한 증권의 이전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인수단을 구성하고 증권발행에 따른 사무처리, 발행자에 대한 조언 및 사무절차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수단은 발행기관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발행기관의 집단으로서 발행자로부터 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인수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약기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청약을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청약기관은 단순히 청약만을 대행하며 모집내역을 집계하여 인수단에게 직접 청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기업공개

기업공개란 주식회사 새로이 발행하기로 결정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투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거래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가 이루어질 때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발행 증권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게 된다.

(나) 유통시장

1) 거래소 시장

거래소 시장은 조직화된 기구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거래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절차를 밟은 상장유가증권만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만이 참여할 수 있다.

2) 코스닥 시장

코스닥시장은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1997년 개설된 증권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은 거래소 없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면서 통합되었다.

3) 코넥스 시장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이다.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코넥스 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의 경우 1억 원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기본예탁금은 현금 외에 대용증권으로도 예탁이 허용 된다.

2. 채권

본문에서는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서 간략히만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채권의 발행시장과 채권의 발행방법 그리고 유통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OFIA BI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홈', '업무지원서비스', 'SITEMAP', and 'ENGLISH'. Below this is a main menu with categories like '채권금리', '발행시장', '유통시장', etc. A '주요메뉴' section highlights '채권정보' and '채권시장'. A '자주찾는 메뉴' section lists '최종호가수익률', '채권사기평가수익률', '국고채통합시스템', etc.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table of interest rates, a line chart for the '2016.02.11 10:21 기준' market, and a list of '공지사항' (announcements) regarding bond auctions. At the bottom, there are logos for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a copyright notice for KOFIA.

출처: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홈페이지(www.kofiabond.or.kr)

[그림 부록-1] 채권발행현황 검색

(1) 채권발행시장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채권발행자는 채권의 발행시장에서 새로 발행한 채권을 직접 일반인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거나 채권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특

정 발행기관에 위임하여 이 발행기관이 일반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한다.

(가) 채권발행자

새롭게 채권을 발행하여 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일반적인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나) 발행기관

채권발행자로부터 채권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이러한 채권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판매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증권발행과 마찬가지로 주관사, 인수단, 청약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관사의 경우 채권발행에 대한 사무처리, 발행과 관련된 자문 등 채권발행 업무를 총괄하며 인수단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관사의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인수단은 주관사와 협의하여 발행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인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들이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인수단의 경우 인수채권을 자신들이 보유해 만기까지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기도 하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채권 도매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청약기관은 신규발행채권을 인수단처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업무만을 대행한다.

(다) 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방법은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개모집(공모)과 비공개모집(사모)의 방법이 있다.

1) 공개모집(공모)을 통한 발행

공모의 방법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공모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채권을 매각하는 직접모집과 발행기관을 통하여 매각하는 간접모집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직접모집

직접모집은 채권의 발행 전에 발행조건을 미리 결정하고 발행하는 매출발행 방법과 미리 결정하지 않고 입찰응모를 받아 결정하는 공모입찰발행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매출발행의 경우 채권의 기간, 표면이율, 원리금 지불방법 등 발행조건을 미리 정한 후 일정기간 안에 투자자들에게 매출하여 매도한 금액 전체를 발행 총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발행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금융채이다.

공모입찰발행은 채권의 발행 전에 미리 발행조건을 정하지 않고 가격, 수익률을 투자자들로부터 입찰 응모를 받아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발행조건을 결정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나) 간접모집

발행기관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행매출액이나 모집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위탁모집, 잔액인수방식과 총액인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위탁모집은 발행인의 대리인 자격 또는 발행기관 자신의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모집하거나 매출을 일으킨 채권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부분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잔액인수방식은 발행기관에 의하여 발행자명의로 된 채권을 모집, 매출하는 것으로 매출 또는 모집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달할 때에 발행기관이 그 잔액의 인수를 채권발행기관이 인수한다는 계약 하에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총액인수방식은 발행한 채권의 총액을 발행기관이 모두 인수한 후 이 기관의 책임 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식이다. 발행조건과 모집 또는 매출 시 발생하는 가격 차이에 의한 손익은 인수발행기관이 귀속되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채 발행의 경우 총액인수방식을 사용한다.

2) 비공개 모집(사모)를 통한 발행

채권발행자가 직접 소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통하여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발행방법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의 경우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며 채권발행자는 규모가 작거나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가 발행기업인 경우가 많다.



[그림 부록-2] 채권 발행 방식 분류

2. 기업신용평가

본문에서 자금운용을 하기위하여 채권이나 CP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을 기술한바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데 있어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 기업마다 다르고 상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 신용평가이다.

신용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이 특정 채권 혹은 기업의 채무를 발행한 기업이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신용등급화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기업이 속한 경영환경 분석, 발행한 유가증권의 발행내용과 발행조건을 기반으로 한 유가증권 분석, 사업, 재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기업분석을 조합하여 기업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무보증회사채,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 신용공여의 제공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용평가등급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대표적인 신용평가회사는 NICE신용평가(www.nicerating.com), Korea Rating(www.rating.co.kr),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가 있다. 각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제공하며 간략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신용평가등급은 크게 장기등급과 단기등급으로 나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급

장기등급의 경우 회사채, 대출채권, 보험금채무, 보증채무, 구조화금융채권 등에 적용되며 그 유효기간은 각 채권의 만기까지이다.

(가)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AAA에서 D등급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되며 AA등급부터 CCC

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의 기호를 사용한다.



출처: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www.kofiabond.or.kr)

[그림 부록-3]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표 부록 -1> 장기신용등급

신용등급	의미
AAA	원리금 지불 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AA	원리금 지불 확실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떨어짐.
A	원리금 지불 확실성이 우수하지만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불 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불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불 확실성에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불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불불능 상태에 있음.

(나) 등급감시 제도

이러한 등급에 추가하여 향후 등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등급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등급감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표현하는 것은 신용평가사마다 상이하니 크게 의미하는 것은 신용등급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동할지, 부정적으로 변동할지, 아니면 그 판단에 대해서 아직 미확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부록 -2> 신용평가사별 등급감시제도

구분	신용평가사분류			의미
	Nice Rating	Korea Rating	한국신용 평가	
긍정적	↑(상향)	긍정적 검토	상향검토	등급상향조정사유발생
부정적	↓(하향)	부정적 검토	하향검토	등급하향조정사유발생
미확정	◆(불확실)	점진적 검토	미확정검토	등급의 방향성이 불확실

(다) 신용평가종류

이러한 신용평가종류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기 평가사마다 용어는 상이하니 본평가, 예비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분류된다.

<표 부록 -3> 장기등급의 신용평가종류

신용평가종류	의미
본평가	회사채 발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발행예정기업이 의뢰하여 이루이는 평가
예비평가	회사채 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이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평가
정기평가	기 공시되었던 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1년 단위로 재평가
수시평가	기 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평가

(2) 단기등급

단기등급의 경우 CP, ABCP, 전자단기사채 등에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본 평가 기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다.

(가)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A1에서 D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며 A2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사용하며 장기등급과 마찬가지로 등급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부록-4> 단기신용등급

신용등급	의미
A1	적기 원금상환능력이 최고수준 임.
A2	적기 원금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A3	적기 원금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 원금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 원금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D	지불불능 상태에 있음.

(나) 신용평가의 종류

신용평가의 종류는 장기평가와 달리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평가사마다 용어는 상이하나 본 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분류된다.

<표 부록-5> 단기등급의 신용평가 종류

신용평가종류	의미
본평가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의 적기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당사에 평가를 의뢰하였을 때 실시
정기평가	본 평가를 통해 확정된 등급을 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신용평가
수시평가	기존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평가

② 자금 지불의 실행 추가 보충사항

1. 어음을 통한 지불

본문에서 설명한 지불 방법은 주로 가용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외에 기업이 자주 사용하는 지불 방법으로서 어음을 통한 지불 방법이 있다. 위 본

문에 기술한 가용자금운용에 따른 지불 방법 외에 기업이 자주 사용하는 지불 방법인 어음을 통한 지불 방법을 본 사항에서는 기술하도록 한다.

(1) 어음을 통한 지불

어음은 어음발행인이 지불기일에 어음금액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수취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불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는 증권이다. 이러한 어음은 크게 환어음과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환어음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대금추심의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용장 거래에 수반하여 환어음이 이용되는 경우 외의 거래관계에서 환어음이 이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으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약속어음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며 국내거래에서 이용된다.

(가) 어음의 종류

어음종류는 상업어음, 용통어음, 견질어음, 전자어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상업어음

상업어음은 진성어음이라고도 하며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된 어음이다. 기업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구매 시 그 지불수단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음이다.

2) 용통어음

용통어음은 상거래 없이 오직 자금의 용통만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부도 가능성이 높다.

3) 견질어음

담보의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현재의 채무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이다.

4) 전자어음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여기서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어음의 경우 배서, 보증 또는 전자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모두를 전자어음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당좌예금계약)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불금융기관을 제3자로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자어음배서 또는 보증을

하거나 전자어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전자어음에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외 전자어음의 지불을 청구할 금융기관,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사업자 고유정보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어음의 경우 지불을 청구할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지불지로 보며 발행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 서명을 한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전자어음의 경우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부록-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나) 어음의 필요적 기재 사항

어음은 어음법 제 75조에 따라 약속어음을 표시하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불을 약속해야 한다. 만기 및 지불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지불받을자 또는 지불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 발행일과 발행지가 기재되어야 하며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 어음의 양도방법

어음의 앞면의 _____ 귀하란, 어음배서란의 피배서인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서 없이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불받을 자란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배서하여 양도를 하여야 배서연속이 인정되어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배서의 방식은 피배서인을 기재하고 배서한다는 글자를 적은 다음에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배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만약 조건을 붙였다면 그 조건은 없는 것이 된다. 또한 일부금액만을 양도한다는 일부배서는 무효이다. 어음뒷면에는 배서란이 인쇄되어 있는데 그 문언 중에서 피배서인, 배서날짜, 주소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배서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하면 유효하다.

배서란이 부족하면 보충지를 붙여 계속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음 배서하는 배서인의 간인을 찍어야 한다.

(라) 어음의 분실

어음의 분실 시 대처하는 방법은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취하는 방법과 똑같다. 지불지에 지불정지를 의뢰하고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통하여 회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기앞수표에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한다.

③ 자금지불 후 사후관리 추가 보충사항

1. 분실신고

본문에서는 현금을 분실하거나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신고를 하라고 기술하였지만 이 절차는 간단하지만 실제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막막한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분실신고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1) 분실신고 절차

현금을 분실하거나 수표, 어음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물을 찾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실행해야할 절차가 관할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것이다. 특히 수표와 어음의 경우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는 꼭 이행해야할 절차이다. [그림 부록-4]은 이러한 분실신고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
 [그림 부록-4] 분실신고 절차

분실물 신고

HOME > 분실물 > 분실물 신고

관할관서

* 관할관서 거주지나 분실지역 관할경찰서 선택

분실정보

* 분실지역 시군구 ex) 서대문구, 상주시, 월곡군

* 분실장소 * 분실장소 분류

* 분실일자 20151022 01

물품정보

* 분류 * 색상 색 계열

금액 이 원 * 수량 개

물품사진(공개)

* 물품명(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반드시 내용 및 특이사항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숫자 4자리 이상 등록 시 저장에 안됩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제목(공개)
분실물 목록에 표시되는 제목입니다. 예) 휴대폰분실

*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공개)
※ 내용 및 특이사항란에 입력된 정보는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지 않으며 분실신고접수증 특장란에는 표시됩니다.

추가물품정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물품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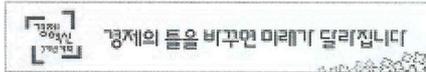
분류 물품명

출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

[그림 부록-5] 인터넷 분실물 신고

[그림 부록-5]는 현금이나 수표를 분실 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이다. 분실물 신고는 인터넷 상으로 할 수 있으며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분실 신고서([그림 부록-6])를 직접 작성 수 있다.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신고를 할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위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림 부록-6]과 같은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있으며 이러한 분실신고 접수증은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나 채권판결 시 구비서류로 사용된다.



■ [별지 제1호2서식]

분실신고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분실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신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품명 수량			분실경위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신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자		성명	2015년 03월 12일 (서명 또는 인)	
접수자 OO경찰서민원봉사실		계급 인턴(공익)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OO경찰서		(인)		
안내말씀				
1. 분실물 신고 및 검색은 유실물 홈페이지(www.lost112.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본 접수증은 단순히 분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서울 경찰서
[그림 부록-7] 분실신고 접수증

④ 투자운용지침 샘플

가용자금 운용을 위한 유가증권 투자 내부지침

주식회사 000000

차 례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제 4 조 총투자한도
- 제 5 조 주식 투자한도
- 제 6 조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 투자한도
- 제 7 조 파생상품 투자한도
- 제 8 조 상장주식
- 제 9 조 코스닥주식
- 제 10 조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
- 제 11 조 채권
- 제 12 조 파생상품
- 제 13 조 의무매각
- 제 14 조 유가증권 운영현황의 보고
- 제 15 조 운용의 독립성

가용자금 운용을 위한 유가증권 투자 내부지침

2010. 01. 01. 제정
2010. 02. 01. 시행
2011. 09. 30. 개정
2014. 08. 30. 개정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용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자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유가증권투자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기업어음이라 함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3. 파생상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6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4. 가용자금이라 함은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시차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 4 조(총투자한도)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는 전체 자산의 20%를 한도로 한다.

제 5 조(주식 투자한도) 주식의 투자한도 및 종목별 투자한도는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한다.

제 6 조(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 투자한도)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의 투자한도는 전체자산의 5% 이내로 한다.

제 7 조(파생상품 투자한도) 파생상품의 투자한도는 전체 자산의 5% 이내로 한다.

제 8 조(상장주식)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투자를 제한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시현
2. 최근 6개월 일평균거래량 5,000주 미만(단, 신규상장 후 6개월 미만 종목은 제외함)
3. 관리 및 감리대상 종목
(단,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감리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제외함)
4.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제 9 조(코스닥주식)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코스닥주식은 원칙적으로 투자를 제한한다.

1.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시현
2. 관리 및 감리대상 종목
(단,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감리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제외함)
3.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제 10 조(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를 취득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승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채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투자를 제한한다.

1. 장기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회사채
2. 단기 신용평가등급이 C 이하인 기업어음

제 12 조(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투자는 외화와 관련된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 한다.

제 13 조(의무매각) 유가증권 운용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종목을 의무매각하여야 한다.

1. 보유 주식의 시장가격이 장부가격대비 4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의무 매각하여야 한다.
2. 전호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 시장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각을 유보할 수 있다.

제 14 조(유가증권 운영현황의 보고) 운용담당자는 매일의 상품별 매매현황을 대표이사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운용의 독립성) 종목의 선정 및 투자금액은 이 지침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담당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NCS 학습모듈 개발진

(대표집필자)

서동욱(서울생주소)*

(집필진)

박성화(오리온)*

박진순(아이티씨지)*

신상혁(세종경영진흥원(주))

윤관호(배화여자대학교)*

황기범(민국저축은행)*

황보우(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주))*

(검토진)

송문헌(큐엠씨)

송영렬(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은태욱(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정호영(서원대학교)

한만용(서일대학교)

(공동개발기관)

이원희(한국HRM협회)

최영희(한국HRM협회)

서송이(한국HRM협회)

(연구기관)

옥준필(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상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성남(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지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한나(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종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시는 NCS 개발진임

※ 본 학습모듈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에 의거하여 개발하였으며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관리됩니다.

※ 본 학습모듈은 <http://www.ncs.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ncs.go.kr